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위한

# 5 개 년 반 부 패 종합계획

2018. 4.



## 목 차 >>

---

I. 추진 배경 .....	1
II. 우리나라의 청렴수준과 평가 .....	3
III. 반부패 정책 기본방향 .....	9
IV. 50개 추진과제 .....	15
1. 함께하는 청렴 .....	16
2. 깨끗한 공직사회 .....	23
3. 투명한 경영환경 .....	47
4. 실천하는 청렴 .....	68
V. 이행관리 체계 및 기대효과 .....	85

---

## 추진 경과

-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종합적 반부패대책 수립 반영 : '17.7월**  
※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제의 주관 부처로 선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과제 요청 : '17.10 ~ 11월**  
-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17.9월) 및 후속 조치(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통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과제 제출
- **온라인·오프라인 의견 수렴 진행 : '17.12 ~ '18.3월**  
- 국민생각함, 권익위 SNS 등 온라인 의견수렴 진행  
- 2030세대 국민모니터단 간담회 실시
-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각급기관 실무사항 협의 : '18.1 ~ 3월**
- **국민과 함께하는 대책 수립을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논의 : '18.3월**  
- 시민사회 단체 의견수렴 등 진행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 '18.4월**  
- 민관이 함께하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보고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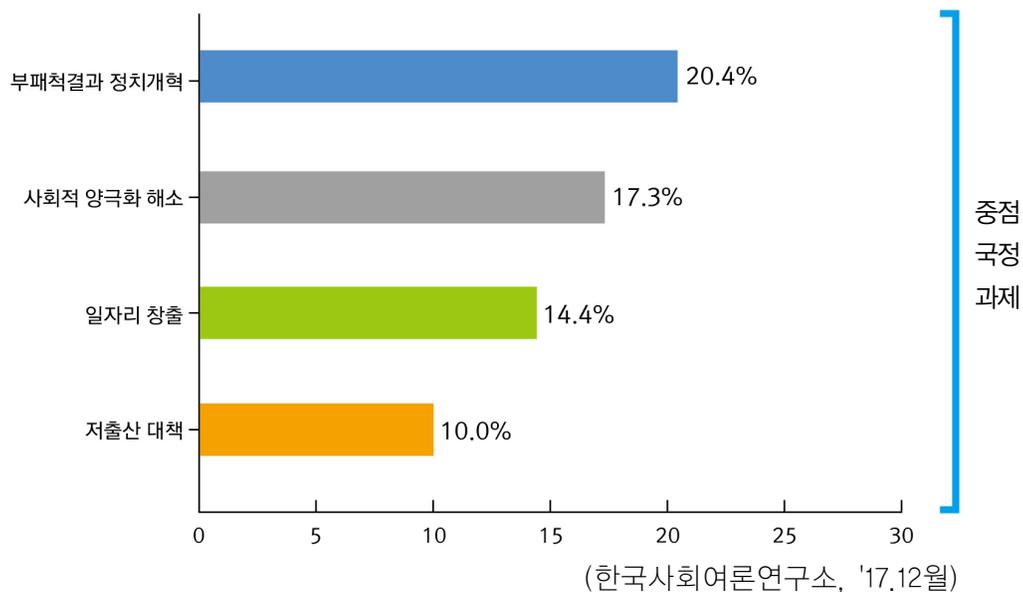
## 추진 배경

---

- 1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반부패·청렴
- 2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치인 반부패·청렴

## 1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반부패·청렴

- 국민들의 촛불 혁명을 통하여 출범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를 초래한 부정부패의 근본적 해결
  - ※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 중 부패비리청산(30%)이 1위 (지상파 심층출구조사, '17.5월)
- 국민들은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언급



## 2 국가 경쟁력의 핵심 가치인 반부패·청렴

- '1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51위이며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으나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 ※ 부패인식지수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로서,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5년부터 매년 발표
- 반부패·청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는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가 불가능
  -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10점 상승시 1인당 GDP 성장률은 0.5%p 증가하고,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3년 단축 (서울대학교, '17.12월)
- UN,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반부패 라운드를 운영, 반부패·청렴을 국제 규범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관리

# II

## 우리나라의 청렴수준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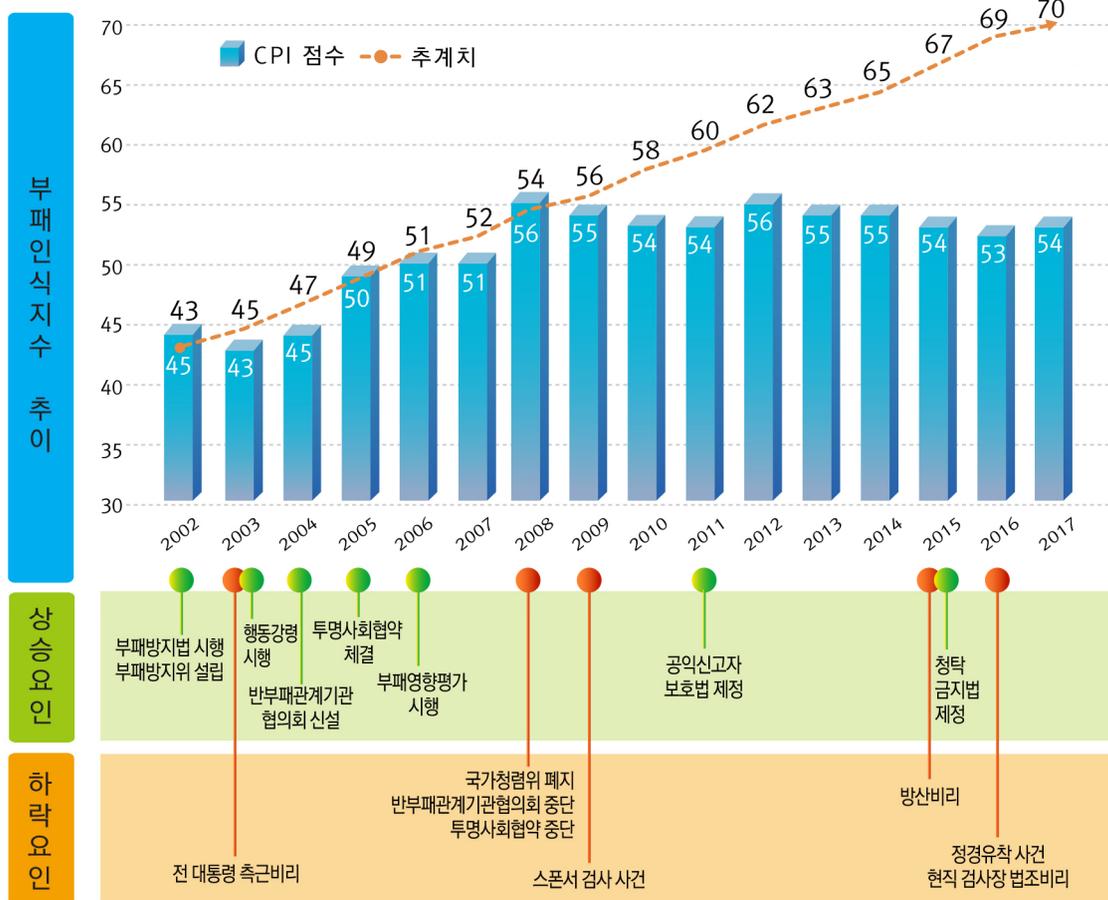
---

- 1 국제 평가기구 등 대외적 시각 : 개선 정체
- 2 대내적 평가 :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수준
- 3 청렴선진국의 시사점

## 1 국제 평가기구 등 대외적 시각 : 개선 정체

- (청렴 수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 경제규모(GDP) : 세계 11위 / 청렴도(CPI) : 세계 51위
- (변동 추세) '02년부터 지속 상승세, '08년을 기점으로 답보상태로 전환
  - 반부패 정책 추진체계 마련, 행동강령·부패영향 평가 등 제도적 요인은 긍정적으로 작용
  - 정경유착 등 대형 비리, 반부패시스템 위축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
  - ※ 긍정적·부정적 요인은 1~2년 후 CPI 점수에 반영되는 경향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이 】



※ '02~'08년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다면 현재 OECD 평균(약 70점)에 도달 가능성(한국TI)

## 2 대내적 평가 :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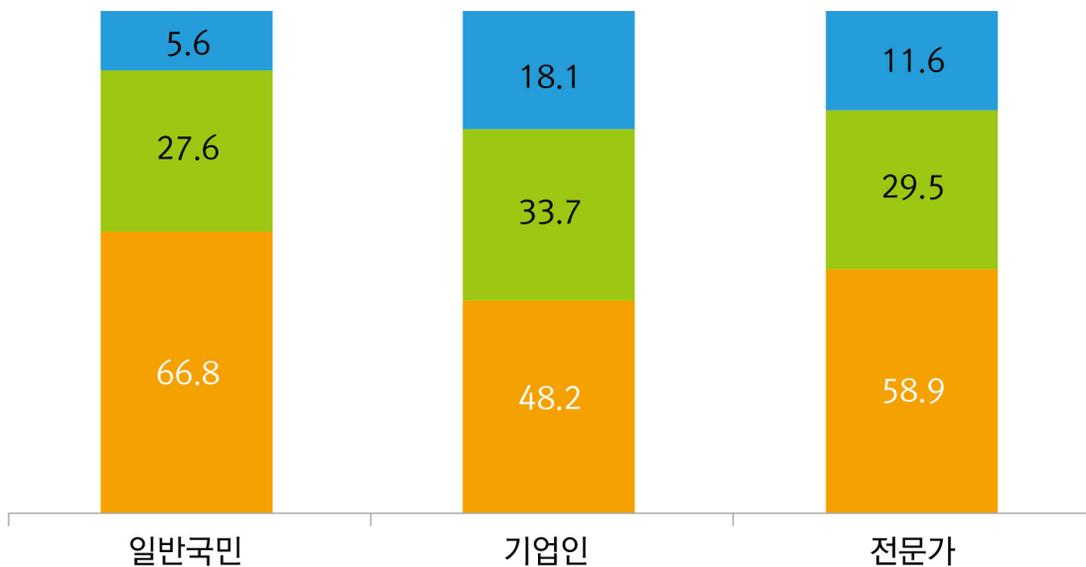
### 1) 우리사회 부패수준과 경험('17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사회에 대한 인식)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66.8%)하고 있으며, 청렴하다는 응답은 소수(5.6%)에 불과

※ 일반국민들이 기업인, 전문가보다도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 【 우리사회의 전반적 부패수준 】

■ 부패하다 ■ 보통이다 ■ 청렴하다 (단위:%)



- (부패 경험) 일반국민들이 실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다는 응답률은 낮으나(1.4%), 주위에서 보거나 전해 들었다는 응답률은 높은 수준(17%)

※ (참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17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경험률(3%)은 독일(3%), 호주(4%)와 비슷한 수준

- (향후 전망)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이 현재보다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과거 조사 결과에 비추어 다소간의 긍정적 전망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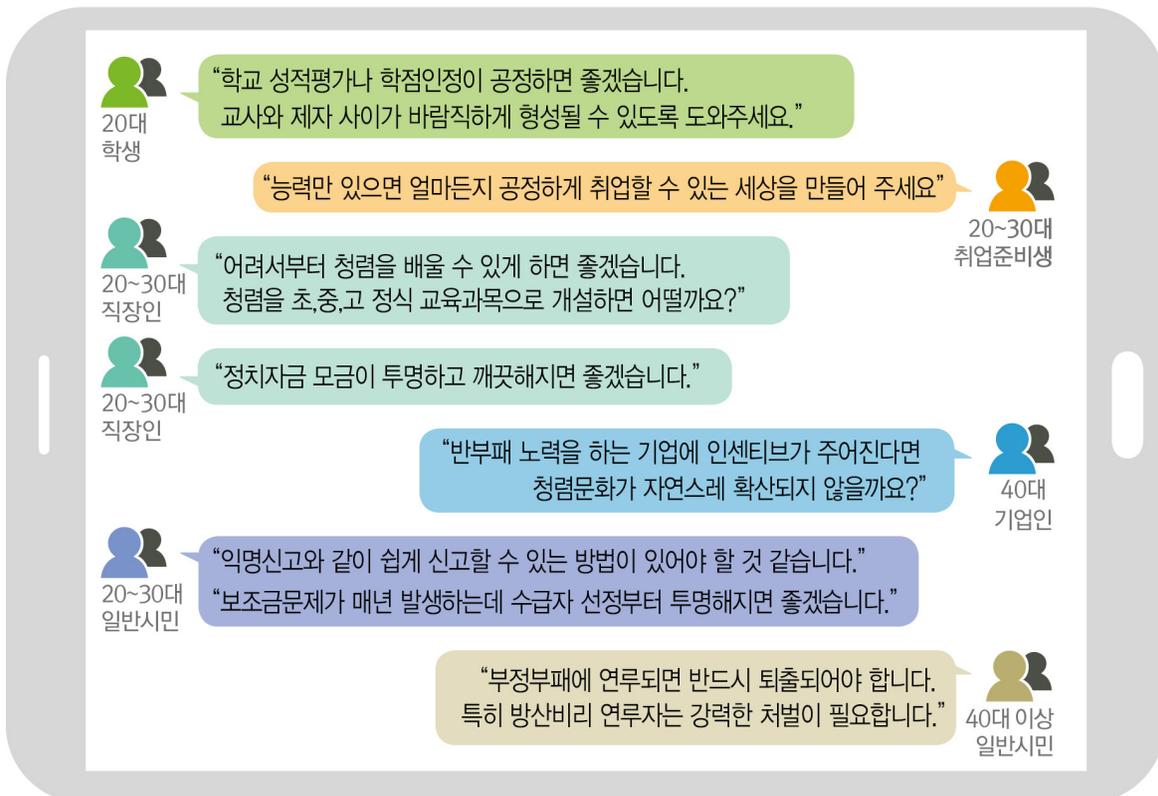
※ 과거 5년간은 같은 설문에서 현재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

## 2) 청렴에 대한 국민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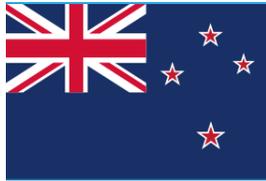
'국민생각함'을 통한 반부패 대책 의견수렴('17.12~'18.2월),  
2030세대 간담회('18.3월), '17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성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 고위 공직자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 정치인(56%) > 고위 공직자(30.3%) > 기업인(5.6%) > 일반시민(4%) > 중하위 공직자(1.8%)
- (부패의 발생 원인)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부패유발 문화(37.8%)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3%) > 고비용 정치구조(19.7%) >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17.9%)
- (부패척결 과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가 최우선 과제
  - 적발·처벌 강화(28.3%) >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감시활동(20.6%) > 부패유발 법·제도 개선(13%) > 부패유발 사회문화 개선(12.9%) > 강력한 부패방지전담기구 마련(10.2%)

### 【 청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



### 3 청렴선진국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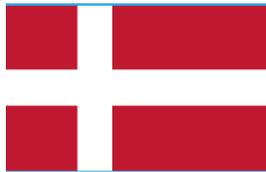


뉴질랜드

CPI 세계 1위

#### “독립된 반부패기구와 국민적 신뢰”

-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중대비리조사청이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규모가 큰 부패사건을 전담하며 국민적 신뢰 확보
  - ※ 권익위는 부패 스캔들 조사권이 없고, 수사기관은 그 자신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음(베텔스만재단, 2016)



덴마크

CPI 세계 2위

#### “작은 부패도 용인하지 않는 사회 문화”

-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로 출근할 정도로 청렴하고 탈권위적 사회,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 ※ 한국은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문화의 일부가 되어 왔으며, 정부가 금품수수의 한계를 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불확실함(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2017)



싱가포르

CPI 세계 6위, 아시아 1위

#### “지도층의 부패척결 의지”

- 탐오조사국이 민간을 포함한 사회전반의 부패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초대총리 리관유 등 공식자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 ※ 민간분야의 부패는 특히 심각한데 이는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하청업체에게 유리한 거래를 강요하기 때문(베텔스만재단, 2018). 정경유착 등 부패 스캔들로 인해 반부패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2017)



홍콩

CPI 세계 13위, 아시아 2위

#### “염정공서와 체계적인 반부패 교육”

- 염정공서라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독립기구와 함께 초·중·고에서 반부패 교육을 이수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활발
  - ※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이 한계를 드러냄. 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한국TI, 2014)



# Ⅲ

## 반부패 정책 기본방향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

목표

'2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

전략



방식



주요 과제

- 함께하는 청렴**
  - ①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② 공수처 등 반부패 관계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 깨끗한 공직사회**
  - 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④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시킵니다.
  - ⑤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⑥ 공공분야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⑦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지속 엄단하겠습니다.
  - ⑧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투명한 경영환경**
  - ⑨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⑩ 기업의 반부패경영을 지원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⑪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실천하는 청렴**
  - ⑫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⑬ 부패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⑭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 분야 부패를 제거하겠습니다.
  - ⑮ 사회 각 분야 청렴 사회협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과제

전략	과제
 <p>함께하는 청렴</p>	<p>①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경제·직능,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및 국민 참여를 통한 반부패 정책 추진</li> </ul> <p>② 공수처 등 반부패 관계기구를 강화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가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추진</li> </ul>
 <p>깨끗한 공직사회</p>	<p>③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낭비 근절 및 부정수급 빈발분야 점검</li> </ul> <p>④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시키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주요사례 공유</li> </ul> <p>⑤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등 강화된 행동강령 이행</li> </ul> <p>⑥ 공공분야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예방부터 적발, 엄정대응, 사후관리 강화</li> </ul> <p>⑦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지속 엄단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li> </ul> <p>⑧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 금지, 공공기관 심의·자문 기구 공정성 제고 등</li> </ul>
 <p>투명한 경영환경</p>	<p>⑨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을 내실화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li> </ul> <p>⑩ 기업의 반부패경영을 지원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반부패가이드 확산 및 반부패 실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li> </ul> <p>⑪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등 합리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li> </ul>
 <p>실천하는 청렴</p>	<p>⑫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수수 시 징계 감경 제한 등 적용대상 확대</li> </ul> <p>⑬ 부패·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보상·포상 확대 및 대리신고절차 도입, 중장기 부패·공익 신고기금 도입 추진</li> </ul> <p>⑭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 분야 부패를 제거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부패 감시 체계 구축, 안전정보 공개 확대 등</li> </ul> <p>⑮ 사회 각 분야 청렴 사회협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각 부문별 사회협약 등과 연계한 청렴 분위기 조성</li> </ul>

## 전체 과제

전략	과제	
 <p>함께하는 청렴</p>	① 범정부 반부패 정책 협의체 운영 ②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 ③ 반부패·청렴 총괄기구 구축 및 기능 강화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⑤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노력 견인 ⑥ 정보 공개 확대 및 반부패 정보 활용 강화	
	⑦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 (★) ⑧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 ⑨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 (★) ⑩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법제화 ⑪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⑫ 퇴직자 행위제한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⑬ 공공분야 ‘갑질’ 근절 (★) ⑭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	
	 <p>깨끗한 공직사회</p>	⑮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 ⑯ 지역 토착비리 엄정 대처 및 제도개선 추진 ⑰ 대형 국책사업 비리 예방 등 투명성 제고 ⑱ R&D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⑲ 국민연금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⑳ 문화체육 분야 공정성 확립 ㉑ 병무행정 부패 취약분야 개선 ㉒ 지도·감독·조사 분야 유착소지 차단 ㉓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㉕ 법조분야 공정성 강화

※ 주요과제(★) : 반부패·청렴 차원의 개선효과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도, 시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과제

## 전체 과제

전략	과제
 <p>투명한 경영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⑳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확보 (★)</li> <li>㉑ 기업회계 내실화 및 감사인 독립성 강화</li> <li>㉒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li> <li>㉓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를 통한 민간의 청렴노력 지원</li> <li>㉔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li> <li>㉕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li> <li>㉖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li> <li>㉗ 재건축·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li> <li>㉘ 사학비리 근절 추진</li> <li>㉙ 공공조달 분야 부패행위 억제</li> <li>㉚ 보건·의료 분야 부패 관행 개선</li> <li>㉛ 악의적·지능적 탈세 근절</li> <li>㉜ 국부유출 방지 대책 추진</li> <li>㉝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li> </ul>
 <p>실천하는 청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㉞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li> <li>㉟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li> <li>㊱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li> <li>㊲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및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li> <li>㊳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li> <li>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 분야 부패방지 (★)</li> <li>㊵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li> <li>㊶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li> <li>㊷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li> <li>㊸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li> <li>㊹ 국제사회 반부패 협력 강화</li> </ul>



# IV

## 50개

## 추진과제

---

- 1 전략1 : 함께하는 청렴
- 2 전략2 : 깨끗한 공직사회
- 3 전략3 : 투명한 경영환경
- 4 전략4 : 실천하는 청렴

---

# 전략1 함께하는 청렴

---

부패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 개별 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민관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 복원·운영



# 1. 범정부 반부패 정책 협의체 운영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 (개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설치
  - ※ (근거)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대통령훈령, '17.9월 개정)
- (구성)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 참여
  - ※ (위원) 대통령(의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
  - ※ (배석) 감사원장, 국정원장
- (기능) 개별 기관 관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 등 논의
  - 반부패 관련 국정과제, 다수 부처 관련 공동대응 과제 등에 대해 논의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개최 가능(반부패 현안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 2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연계하여 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 (실무협의회) 기관간 상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 적극 운영
  -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발굴과 검토, 반부패 현안 논의, 후속조치 이행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
  - ※ (실무위원)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 (감사관 회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활성화
  -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조속한 이행 유도
  - ※ (참석대상) 1,402개 공공기관 감사관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범정부 반부패 정책 협의체 운영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지속 추진

## 2.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중심으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 (개요) 반부패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
  - ※ (근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구성) 경제·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과정의 참여, 사회협약 등 다양한 반부패 협력 과제 수행
  - 반부패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평가, 민간부패 대책 검토, 사회협약 체결 지원·평가 등
  -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향후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 지역별 협의회 구축 지원 등 추진

### 2 국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국민공감 반부패 정책 수립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활용,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안·평가 등 활성화
  - ※ (국민생각함) 공공정책의 전 과정(수립·추진·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 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 (오프라인) 반부패 중요 대책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추진
  - ※ (예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운영, 지역협의회 구축 지원 등 추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마련	국회 심의		
		민간부패 실태조사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 실시		평가 실시

### 3. 반부패·청렴 총괄기구 구축 및 기능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반부패·청렴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정립

- (반부패 콘트롤타워)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 기능 수행
  -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서 범정부적 반부패 아젠다 발굴, 현안 논의, 반부패 과제 이행점검 등 총괄 관리

#### 2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 강화

- (조직 재설계 등)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 신고자 보호 기능 등 중심으로 기능 강화
  - 권익위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재설계 추진
  - 내실 있는 신고처리를 위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완 등도 병행 검토
- ※ (참고) 국정농단 사태와 대형 권력형 비리로 반부패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권익위 내 '반부패·권익행정 혁신 추진단'을 구성('17.10~12월), 조직·기능 진단 실시

#### | 혁신 추진단 건의 요지 |

- ▶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고충처리 기능 연계 강화, 행정심판 기능 분리 검토
- ▶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공정성 강화
  - 조직명칭, 대표성, 위원 임기, 위원장 인사청문회, 반부패 관련 기능 조정 등
- ▶ 국정과제 수행과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적 기능 보강
  - 부패방지 전문성·책임성 강화, 신고자 보호 전담성 강화,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복원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반부패·청렴 총괄기구 구축 및 기능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법안통과와 연계 후속조치 진행		

※ (참고사항) 반부패·청렴 총괄기구의 대통령 소속 기구로의 격상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법무부
------	-----------	-----	-----

### 1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독립기구 신설로 권력형 비리 근절

- (개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
  - ※ '16.7.~'17.10. 관련 의원입법안 4건 발의, 국회 사개특위 논의 전망
- (주요 내용) 고위직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단 포함
  - ※ 공수처의 독립적 업무 수행, 공수처장의 국회 추천 및 대통령비서실과 공수처간 인사이동 제한 등

#### | 공수처 법무부(안) 주요 내용 |

- ▶ 소속/권한 : 독립기구 / 수사·기소권
- ▶ 규모 : 처장·차장 각 1인 포함 공수처 검사 25인, 수사관 30인, 기타 직원 20인
- ▶ 수사대상자 :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무직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전직 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배우자직계존비속
  - ※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
- ▶ 수사대상 범죄 :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 및 그 관련범죄
  - ※ 공범, 범인은닉, 위증, 관련 인지사건 등

### 2 국회 논의 지원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 추진

- (법안의 신속통과 추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법무부(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 최근 국회에 구성된 사개특위의 공수처 논의 및 법안 심사 지원 등을 통하여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노력 경주
  - ※ ('17.10월)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 의견 발표 / ('17.10~11월) 법무부 의견서 국회 제출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령 제정 추진	관련 법령 시행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 (참고사항) 검찰청과의 인사 독립성, 국회의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5.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노력 견인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청렴도 측정을 통한 기관별 취약분야 진단 확대

- (진단모형 개선)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의견 수렴 및 워크숍, 사회조사·통계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측정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설문항목 보완, 측정 대상자 범위 확대, 민원인·내부구성원·전문가의 설문결과 가중치 변경 등
- (결과 활용)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반부패 노력 견인
  - 청렴도 취약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청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연계

### 2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자율적 청렴노력 견인

- (청렴도 연계 운영) 시책평가의 대상기관과 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급기관 및 공공 부문 청렴수준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운영
  - 청렴도 하위기관(기초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상위기관은 제외하는 등 평가 대상기관을 청렴도 측정과 연계하여 조정
- (결과 활용) 우수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부패방지 우수시책은 전 공공부문에 확산하여 시책평가를 반부패정책 발전 도구로 활용

### 3 청렴도 측정결과 대국민 공개

- (결과 공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및 우수시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 및 적극적 언론홍보 등을 통해 자율적 청렴수준 향상 유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노력 견인	청렴도 측정대상 워크숍, 의견수렴	측정모형 개선 측정결과 공개	측정대상 워크숍	측정결과 공개	지속 추진
	시책평가 평가기준 조정	시책평가 실시	평가기준 조정	평가실시	지속 추진

## 6. 정보 공개 확대 및 반부패 정보 활용 강화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 관	행안부, 권익위
------	--	-----	----------

### 1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실질적 운영【행안부】

- (정보공개 체계 내실화) 정보공개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 제고
  - ※ 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권 신설, 심의회를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외부위원 확대(1/2→2/3) 등
- (정보공개 문화 정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강화 등 정보공개 문화 정착 유도
  - ※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의무, 정보공개담당자의 처리지연·공개 거부 금지의무 신설 등
- (정보관리 과정 개선) 비공개 정보의 세부기준 관리 강화
  - ※ 의사결정 과정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 시 현재 단계 및 종료예정일 추가안내, 공공기관 비공개 관리세부기준 적정성 점검(매 3년) 등 신설

### 2 반부패 정보의 기관간 공유 강화【권익위】

- (지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간 반부패 정보를 공유하고 부패방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패방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 향후 반부패 활동내역, 교육사례, 공익신고 운영 현황 등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활용하고 우수시책 검색·공유 기능 제공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정보 공개 확대 및 반부패 정보 활용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시행령 개정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1차 개발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전략2 깨끗한 공직사회

---

공공분야의 부패 유발요인부터 착실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분야의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



## 7.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국조실, 행안부, 감사원, 기재부

### 1 「부정환수법」 제정【권익위】

- (법 제정 추진)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의 근절을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득은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 액수의 최고 5배까지 환수 조치 규정
    - 「부정환수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등 입법화 적극 추진
- ※ '16.6월 국회 제출, '18.3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 「부정환수법」 정부(안) 주요 내용 |

- ▶ 부정청구로 인해 얻은 부정이익은 전액 환수
- ▶ 고의·위반정도 등에 따라 징벌 환수제도(최대 5배) 도입, 세부 환수절차 마련
  - ※ 징벌 환수 제외 대상 : 100만원 이하 소액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 ▶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 ▶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등

### 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관리체계 강화【행안부】

- (통합관리)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관리시스템 마련
  - 지방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보조금 관리 전반을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시간 관리
  - ※ 중복·부정수급 사전차단, 실거래 증빙을 통해 용도 외 사용여부 등 검증·통제
- (법 제정 추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 추진
  - 지방보조금 관리절차, 정보공시, 부정수급 제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포괄
- (감사·감찰 강화)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시 등 강화
  - 보조금 편취 등 지방보조금 관련 전국 권역별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및 정부합동 감사와 연계한 위반사항 집중 점검

### 3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 분야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국조실, 권익위】

- (부정수급 집중점검) 범정부 대책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마련·추진
  -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생활 밀접성, 구조적·고질적 관행 여부, 예산 규모 및 시의성, 파급효과 등 고려 8개 합동점검 과제 선정
    - ※ 보건·복지 / 농림·수산 / 고용·노동 / 교육·환경 분야 등
  - 지역·사업방식 등 유형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점검한 후,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제도·관행 등 종합 개선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운영)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주관 분야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청렴도 측정결과 등을 분석하여 빈발 분야 도출, 실태 점검 실시

### 4 낭비성, 편법 지출 예산에 대한 감시 강화【권익위, 감사원, 기재부, 행안부】

-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부실한 연구용역계약(위탁), 해외연수보고서 표절 사례 등의 예산 낭비 근절 추진
  - 연구용역과제 선정, 연구 진행, 결과 평가 등 단계별 부패취약요인에 대해 실태점검
    - ※ 지자체별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19년)
- (취약예산 관리 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당사용 가능성이 있는 예산 중심으로 사용실태 점검 등 추진
  - ※ 특수활동비의 경우, 현금사용시 증빙을 강화하고 기관별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며, 집행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시행('18년~)
- (예산낭비 감시) 주민·전문가가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도별 '국민감시단' 신설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법안통과와 연계 후속조치 진행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18년)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19년)		
	복지보조금 빈발분야 실태점검	지방보조금 통합시스템 계획수립	복지보조금 빈발분야 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적용	시스템 확대 보급
	예산낭비 국민감시단 설치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추진	국회 제출	국회 심의	

## 8.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조사 및 취약요소 개선

- (실태조사·분석)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의 집행력 지속 확보
  - 부적절한 신고처리, 빈발하는 각종 위법·편법 행위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공유, 엄정한 처리 유도
- (민간에 대한 청탁 규제) 공직자가 직위·영향력을 활용하여 민간에 부당하게 청탁하는 행위 금지(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8.4.17.)
  - ※ 행동강령 이행현황 등 향후 추진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입법 추진

### 2 기관별 청탁금지제도 운영 역량 강화 및 해석의 전문성 제고

- (기관별 자체 해결 역량 강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발생 시 기존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이 우선 해결
  - 기관별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청탁방지담당관 의견 첨부 후 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
- (해석 지원)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운영 활성화로 유권해석의 전문성·일관성 제고
  - 권익위는 해석자문단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질의 등을 중점 검토하고, 기존 빈발·반복 질의는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이 대응
  - ※ 해석자문단 :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 각급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관별 현장 대응력 제고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공공기관 운영 실태조사 실시 해석자문단 위촉	점검결과 분석 해석자문단 운영	제도운영 반영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지속 추진	

## 9.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

과제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input type="checkbox"/> 일반	주관	권익위
------	--	----	-----

### 1 공직사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 (행동강령 개정 시행) 직무수행 중에 공직자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익추구 행위’ 방지 추진
  -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의 제한,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구축
  - ※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18.4.17.)

#### |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 |                    |                          |
|--------------------|--------------------------|
| 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②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③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④ 가족 채용 제한               |
|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⑥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 ⑦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⑧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

### 2 개정 행동강령의 안정적 정착

- (홍보 강화)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개최, 행동강령 업무편람, 법령집, 교육용 시청각 자료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 활성화
- (이행점검 강화) 청렴도 하위기관, 신규 행동강령 적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이행현황 점검 실시
  - ※ 향후 추진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이해충돌방지 입법 추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	행동강령 강화 시행, 홍보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	지속 추진		

## 10.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법제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관	인사처
------	--------------	----	-----

### 1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거부 근거 마련

- (근거 마련) 공직자가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복종 의무의 한계를 명시
- (불이익 금지)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이행거부를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규정 마련
  - ※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소청 또는 고충(상담·심사)을 통해 구제하고,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2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신고 활성화

- (신고주체)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 ※ 인사혁신처 예규(「인사감사사무처리규칙」)에 규정되었던 인사부조리 신고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
- (사후관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를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 ※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인사관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 강화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법제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하위규정 개정	시행상황 점검·공유	

## 11.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인사처
------	--------------	-----	-----

### 1 '특정재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 (주요내용) 재산공개대상자는 사적 재산의 보유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 특정재산 : 부동산(건물·토지), 비상장 주식, 출자 지분, 사인간 채권·채무 등
  - 재산등록시 고위직(재산공개대상자)은 소유자별로 특정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신고의무 강화

### 2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강화

- (소명요구권 신설)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소명요구권 신설
  -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재산 공개대상자(1급 이상 공직자)에서 비공개 대상자(2급 이하 공직자)까지 확대
  - 의무자는 소명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 (제재 강화) 거짓소명 등 부당한 등록·심사 대응에 대한 제재 강화
  - 허위자료 제출 또는 거짓소명 등 부당한 방식으로 등록·심사에 응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현재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주로 서면자료를 제출받는 소명이 중심이 되고 있어, 등록 의무자가 거짓으로 소명하였을 경우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공직자 윤리법령 개정 추진		세부지침 마련 및 교육·홍보	운영실태 점검·평가

※ (참고사항)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12. 퇴직자 행위제한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인사처, 권익위
------	--------------	-----	----------

### 1 퇴직자 행위제한 등 실효성 제고 【인사처】

- (신고제도 내실화) 퇴직 공직자의 부정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현재 부당한 청탁알선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청탁알선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 강화
  - 청탁 등에 관한 사실을 아는 누구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를 이유로 가해진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보호조치(원상회복 등) 의무를 부과
- (접촉관리)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직자와 재직자간 접촉을 제한하고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 검토

###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계 정비 【권익위】

- (사각지대 해소) 부패행위로 인한 면직자(비위면직자)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 법원판결례,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비위면직자 통보 누락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 강구
  -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에 대해 공공기관 등으로의 취업을 5년간 제한
- (제도홍보 및 점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및 취업실태 점검
  - 비위면직자가 취업 전에 취업가능 여부를 소속기관에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민관유착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대폭 강화
- (제도운영 내실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업무관련성 심사 등 운영방식 개선 검토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퇴직자 행위제한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공직자윤리법령 개정 추진, 접촉관리 방안 마련 취업심사자문 위원회 도입		세부자침 마련 및 교육·홍보	운영실태 점검·평가

## 13. 공공분야 ‘갑질’ 근절

과제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input type="checkbox"/> 일반	주 관	국조실
------	--	-----	-----

### 1 공공분야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제도 정비) ‘을’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 원인 등을 분석한 후 권한 행사, 재량, 처벌에 관한 법령, 지침 등 정비
- (유인책 마련) 기관장·기관 평가, 성과급 지급 등에 갑질 근절 노력 반영
  - ※ 정부업무평가(국조실),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부패방지 시책평가(권익위) 등
- (교육홍보 강화) 주기적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공익광고, SNS 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 2 ‘갑질’ 사례 조기 적발 및 엄정 대응

-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 ※ 상담, 피해구제,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률·심리적 지원 및 보호 기능 담당
- (징계처벌 강화) 징계 수위 상향, 강력한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검토
  - ※ 갑질의 기초가 되었던 직무에서 배제하고 승진, 전보에서 불이익 조치 등의 방안 도입 고려
- (지휘감독 소홀 문책) 기관의 갑질을 묵인방치·은폐한 기관장·상급자 엄중 문책

### 3 피해자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 (피해자 관리·지원)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불안정 등 모든 피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관리·지원
- (대책 이행상황 점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기관별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 대책의 실효성 확보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공분야 ‘갑질’ 근절	TF 구성, 부처별 실태점검 및 대책 마련	갑질 근절방안 보고	지속 관리		

## 14.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	-----------	-----	---------------

### 1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권익위】

- (협력체계 구축) 채용비리 근절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권익위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조치 계획 수립·추진
  - ※ 한시적 합동대책본부를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 관리체계로 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 이행점검, 반부패정책협의회 보고 등 실시
- (신고체계 마련) 권익위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
  - ※ 신속한 사실확인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연계 등 추진

### 2 채용비리 후속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 (부정행위자 조치 등 이행관리) 수사 및 징계처분 진행상황 점검, 중징계 확정 사안의 부정 합격자 재조사, 피해자 파약구제 등 추진
  - ※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및 각 부처 감사관 협의체 운영 등
- (제도개선 이행관리) 채용비리 연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공공기관 내외부 상시 점검 체계구축 등을 위한 법·지침 정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채용비리 연루 임원 직무정지·명단공개, 주무 부처 인사감사 근거 등 명문화(2.28. 개정 공운법 국회 통과 → 시행일(9.28.) 前 시행령 정비 추진)
  - ※ 공공기관 지침 정비 : 채용비리 연루 직원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근거 명문화, 외부 면접위원 참여 의무화 등(3.8 개정 완료)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적발사항 이행관리 채용규정 등 제도개선 이행관리		반부패정책 협의회 등 보고	지속 점검 관리	

## 15.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방사청
------	--------------	-----	-----

### 1 방위사업 비리요인 제거 및 취약사항 보완

- (비리요인 제거) 방산 브로커의 음성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비리 무역대리점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 운영 및 법제화, 퇴직공직자 취업관리 강화
  - ※ 입찰이나 계약 이행을 조력하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등록 제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18.12월)
  - 비리가 적발된 무역대리점에 행정제재 부과, 미등록 방산브로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조치 방안 강구
- (취약사항 보완) 방위사업 전 단계별 비리발생 연결고리 차단
  - 방위사업 참여자의 구체적 행동기준 정립, 단계별 주요업무 수행 전·후 쟁점사항 검토 및 평가 강화
  - ※ '방위사업 비리'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리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검토 중(정책연구용역 실시 예정, ~'18.10월)
  -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現 23명→25명) 등

### 2 방위사업 성격에 따른 유형별 제재방안 도입

- (유형별 제재)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군인·공무원 징계규정, 업체·조달 여건에 따른 제재 및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 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 성실수행 인정제도 :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행시 창의·도전적 목표설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음에도 실패한 경우에는 성과를 인정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면제해 주는 제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		「방위사업법」 개정, 연구용역	군인/공무원 징계규정 개정 추진	연구용역 후속 법령개정	

## 16. 지역 토착비리 엄정 대처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검찰청, 경찰청, 권익위
------	--------------	-----	---------------

### 1 이권 개입 등 지역 토착비리 집중 수사【검찰청, 경찰청】

- (수사 강화) 지역 상황에 따른 중점 수사 분야 선정,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반),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사 진행
  - ※ 중점 수사 대상 분야 : 지역 유력인사들의 이권 관련 불법 개입, 학원·교육비리, 사이비언론 등
  -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브로커 및 공직자와 결탁한 토착세력 단속 주력
  -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국세청·감사원·지자체 협조체제 구축
- (사건기준 강화)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 상향 추진

### 2 지역 카르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권익위】

- (추진방향) 지역사회 내 민관유착에 따른 의사결정의 왜곡, 부당한 예산집행 차단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선심성 예산 집행, 인허가 및 계약 관련 특혜 등 지자체의 권한 남용 근절, 관리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감사시스템 개선 등
  -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개선효과 확보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지역 토착비리 엄정 대처 및 제도개선 추진	중점 수사분야 선정	단속독려 및 실적 점검	단속결과 분석 및 대책		
	검찰사건처리 기준 검토	개정된 기준의 시행점검			
	제도개선 검토(연중)		제도개선 검토(연중)		

## 17. 대형 국책사업 비리 예방 등 투명성 제고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관	국조실
------	--	----	-----

### 1 국책 건설사업 비리 예방 감시

- (점검 강화)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시공 중인 사업의 예산낭비,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추진
  - 사업 설계서, 입찰관련 자료, 언론보도, 감사수사 사례,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제보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심층 분석
  - ※ 공사 완료 후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원상회복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건설사업은 공사 진행단계부터 비리를 예방하고 조기에 시정할 필요
- (불공정 관행 점검) 국책건설 사업 과정의 부당한 입찰참가 제한 등 官의 갑질, 정부공공기관 퇴직자 관련 업체 우대 등의 불공정 행위도 집중 점검

### 2 부실·낭비 요인 제도개선 추진

- (사후관리) 적발결과는 엄정 조치하고,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 적발된 비리는 엄정한 시정조치(수사외의, 징계, 행정처분 등)로 경각심 고취
  -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시 발견된 부실·낭비 공사의 실태,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원인 해결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대형 국책사업 비리 예방 등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허위경력 증명실태 점검('18.5월)	도심 수해복구 사업점검, 1층 시설물 안전진단 체계 점검	'18년 하반기 중 과제 선정	'19년 상반기 중 과제 선정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한시적인 TF로 운영중이며 현재 존속기한은 '19년말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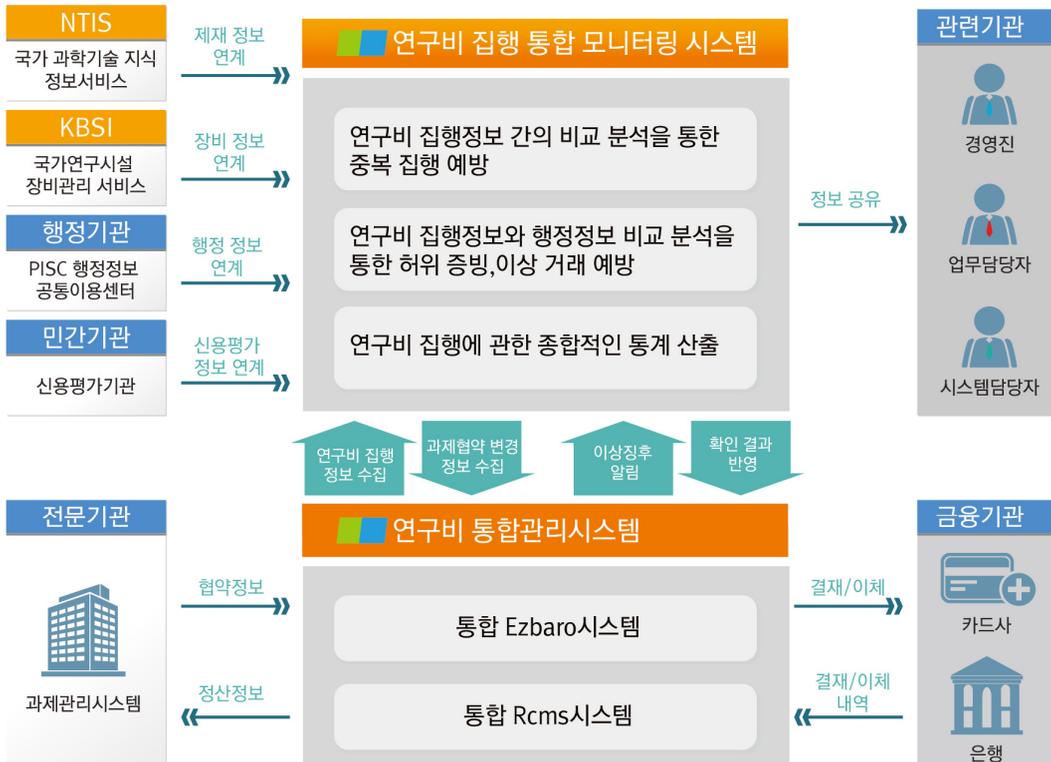
## 18. R&D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과기부, 중기부
------	--------------	-----	----------

### 1 연구비 집행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기부】

-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의 연구비 집행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연구비 중복 지급 예방
    - ※ 현재 4개 시범연계기관과의 연계 및 중복 지급 확인 기능 구축('17.12월)
    - ※ 향후 각 부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2개로 통합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범부처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 가능
  -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외 행정정보를 연계, 연구자들의 증빙 부담 경감과 연구비 부당집행 이상 징후를 정산 전 확인

#### | 연구비 통합 관리 개념도 |



## 2 중소기업 분야 R&D 부정사용 대응 강화【중기부】

- (단계별 조치) 예방 → 적발 → 제재 등 R&D 부정사용 전 과정에 걸쳐 대응 강화
  - (예방) 사업비 사용교육 및 청렴서약서, 부정사용 사례집 발간, 연구비 포인트제도 등 부정사용 사전 예방 제도 시행
    - ※ 연구비 포인트제도 : 연구비 포인트 지급 후 기업이 비목·용도·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수탁은행이 지급처에 자금 지급
  - (적발)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 유형을 선별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제재) 부정사용 사업비 환수, 제재처분 부과(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수사의뢰 등을 통한 형사처벌 연계
    - ※ R&D 참여제한 확대(5년→10년),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사용금액의 5배이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부정사용 사업비 강제징수
- (자금유용 제재) 연구비 부정사용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추진
  - (참여제한) 연구비 부정사용 기업의 참여제한 사업 확대(중기부 R&D → 중기부 소사업),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참여제한 확대(3년→5년)
  - (정보공개) R&D 선정과제 및 기업정보 공시를 통한 자율적 점검체계 마련, 연구비를 악의적으로 부정사용한 기업명단 공개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R&D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연구비 집행 점검 항목 정비, 정보연계 법제화 등 추진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개선, 기능 강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 19. 국민연금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국민연금공단
------	--------------	-----	--------

### 1 투명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정립

- (스튜어드십) 연구용역,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구체적 이행을 위한 관련 지침 제·개정안 마련 추진
  - ※ 스튜어드십 코드 :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
  - ※ 국민연금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요구 확대
-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 투자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 세부 투자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
  -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기금운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 2 내부 기금정보 유출 방지 강화

- (정보보호 강화) 기금본부 퇴직예정자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금 정보 보호 대책 실행
  - 기금정보 유출 원천 차단을 위한 전산통제 강화,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인증제 등 시행
  - 공단 이메일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점검, 퇴직자 특별교육 등 강화
  - ※ 전산통제 : 기금 기밀자료 및 기금정보시스템(NPF)의 모든 자료에 대한 문서 암호화 적용, 외부 발송 시 결재권자 필수 사전승인제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국민연금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검토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지침), 정보공개 강화 추진 등	지침 이행 후속조치		
	정보인력 보강	정보보호 모니터링 지속 실시			

## 20. 문화체육 분야 공정성 확립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문체부
------	--------------	-----	-----

### 1 문화 영역의 불공정 근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 문화계 불공정 방지 대책 마련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 및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 ※ 피해사례 신고·제보 등을 위한 홈페이지(www.blacklist-free.kr) 및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위(전원위, 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소위) 운영('17.7~'18.4월)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백서 등 발간 추진

### 2 체육 영역의 불공정 근절

-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TF)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17.10.11.) 및 위원 추천 ('17.10.12.~18.), 보고서 채택('18.2.28.)
  -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최종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 지속 추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문화체육 분야 공정성 확립	문화영역 불공정 제도개선안 마련	지속 시행 백서 발간			
	체육영역 불공정 후속조치	지속 추진			

## 21. 병무행정 부패 취약분야 개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관	병무청
------	--------------	----	-----

### 1 병무행정 분야 부패 사각지대 관리 강화

- (비리 예방) 병무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사전예방 체계 구축
  - 병역기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등을 중심으로 부패 취약분야 분석과 주기적 점검 체계 운영
  - ※ 소속기관 자체감사 시 정책감사 연계(상시), 주관부서 조치 이행 점검(분기1회)
  - ‘병무감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패·업무과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 업무처리 착오·과실 등 오류에 대한 실시간 점검으로 오류사항 진단 및 자가 조치 ('18.1월 시스템 오픈)

### 2 기관 내·외부 부패경보시스템 운영 강화

- (외부) 병무청 민원출원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요구 및 불친절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 민원처리 다음날 민원처리 과정에 금품요구, 불친절 사례가 있는지 스마트폰 설문 문자를 발송하고 금품요구, 불친절 응답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내부) 내부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기능 업그레이드 및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내부업무 관행 조직 문화 등의 진단 분석
  - ※ 부정청탁, 사적 이해관계 충돌, ‘갑질’ 여부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병무행정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각지대 점검강화	부패경보 시스템 결과분석	병무감사 시스템 성능개선	부패경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 22. 지도·감독·조사 분야 유착소지 차단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관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
------	--	----	---------------

### 1 근로감독 분야 부조리 개선【고용부】

- (근로감독 절차 개선) 근로감독 행정절차 개선 및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표준화 추진
  - 감독대상 사업장의 선정부터 감독, 후속조치 등 감독행정 절차 전반 개선
  - 출석요구 및 사건조사, 처리결과 통보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및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간소화
  - ※ 근로감독관의 권한 남용, 기업과의 유착·금품·향응수수 등 차단
- (인사관리 강화) 채용방식 개선 및 청렴성 평가와 전보인사 연계, 근로감독관에 대한 행동수칙 마련 추진
  - ※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등 마련 병행 추진

### 2 풍속업무 지도단속 유착 근절【경찰청】

- (풍속담당 적격심사) 풍속단속요원의 신규전입, 연장근무 희망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강화 (6개월 단위), 금지별 근무연한 제한(1금지 1년, 2·3금지 2년)
  - ※ 매 6개월 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생활안전과장, 계장급 5인 이상), 적격심사 실시
- (특별관리업소 지정·관리) 반복적 미단속 업소, 대형 풍속업소 등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고 교차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
  - ※ 특별관리업소에 대한 관리자의 업무 구체화 및 지방경찰청 광역단속반의 교차·합동 단속 실시
- (청렴교육 실시) 지방청 주관, 상·하반기 인사 배정 시 유착비리 사례 내용을 포함한 청렴 교육 실시
  - ※ (주요 유형) 금품·향응수수, 단속정보 유출, 직무유기 등

### 3 공정거래 업무 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공정위】

- (접촉내역 보고) 공정위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시행('18.1월)

#### | 보고 대상 외부인 (3개 유형) |

- ▶ (법무법인 변호사 등)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 ▶ (대기업 임직원) 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  
\* 57개 집단 1,980개 회사('17년 지정 기준)
- ▶ (공정위 퇴직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한 자

- (접촉 중단) 보고 대상 외부인이 조사 정보 입수 시도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보고

#### | 외부인 접촉 중단 사유 (5개 유형) |

- ① 조사 계획, 조사 방향, 내부 검토 의견 등의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②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합 청탁을 하는 행위
- ③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④ 「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 ⑤ 기타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지도·감독·조사 분야 유착소지 차단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마련	후속조치 시행			
	청렴교육 및 적격심사(반기별) 특별관리업소 지정		청렴교육 및 적격심사(반기별) 특별관리업소 지정		
	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시행		제도 개선 및 준수 여부 지속 감시		

## 23.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 금지

- (특혜규정 정비) 불합리한 수의 계약 관련 규정 등 정비로 전현직 공직자간 특혜성 계약 관행 개선
  - 공기업·준정부기관 : 퇴직자단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신설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상 수의계약 금지 대상
    - : (현행)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 → (개선) 퇴직자단체 등 추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위법·부당한 예산 지원 금지
  - ※ 퇴직자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 운영비 명목의 부당 예산 지원 등
  -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퇴직자 관련 특혜성 계약·지원 금지 규정 마련
  -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등
- (후속 조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율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이행

### 2 공공기관 심의 자문기구 의사결정 공정성 제고

- (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 규정의 명확화 및 책임성 강화
  - 위원 해촉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민간위원의 비위행위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청렴성 확보 장치 강화
- (위원회 운영) 위원회 심의 및 공개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각종 심의기준 변경 시 감사 부서의 확인을 거치거나, 변경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성 및 특혜시비 발생 차단
  - 회의록 작성·보관 의무, 회의내용 공개범위·방법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관계 법령에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 3 ▶ 향만, 해운 등 폐쇄지역 관피아 근절

- (폐쇄지역 민관유착 근절) 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민·관 유착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폐쇄적 직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 향만 : 퇴직자 취업확인 강화 및 취업제한 대상 확대, 각종 입찰·계약 시 민간업체의 퇴직공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 해운 : 선박안전 분야 재취업 퇴직자의 부정합 청탁·알선 적발 시 검찰고발 의무화, 선박검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정비 등
  - 방산 : 국외조달 군수품 품질 보증 관련 자료 확인·검증 강화, 국외 조달원 등록·관리 체계 개선,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 강화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퇴직자단체 특혜성 계약 개선방안 권고	기관별 계약 관련 법령 개정 등 검토		이행현황 점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 관련 개선방안 마련	폐쇄지역 관련 개선방안 마련	기관별 심의자문기구 및 폐쇄지역 관리감독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24.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관	권익위, 국회
------	--------------	----	---------

### 1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 검토

- 정치자금 범위의 재검토 추진
  -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상한기준이 없고 수입 내역에 대한 선관위 신고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 ※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 5천만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미포함
  - (고액 특별 당비) 당비의 종류, 납부절차와 납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천대가 수수 등 악용 방지

### 2 정치자금의 정보공개 확대

-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기부자 신상 및 인적 사항 공개대상 금액 기준 하향 조정
  - ※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 관련 후원금은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한하여 인적정보와 수입일자, 금액 공개, 일본 5만엔 이상, 미국 200달러 이상 기부자 공개
  - 정치자금 보고서,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등의 공개기간 확대(현행 3월)
-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 공론화 추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학계,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공청회 추진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5. 법조분야 공정성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민관합동(권익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	--------------	-----	-------------------------

### 1 법조분야 전관예우 관행 개선 검토

- (전관예우 개선안 마련 검토) 현행 전관예우 규제의 실효성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검토 방향(예시) : 수임금지 기간의 재검토, 수임금지 위반 시 책임성 강화 등
- (참여에 기반을 둔 대안 마련)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정부 내 유관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의 사회적 공감대 확보

### 2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주요 내용)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변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 추진
  - ※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여 방어권을 실질화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법조분야 공정성 강화	전관예우 개선안 마련 협의체 구성	현행 제도의 실효성 등 검토	개선과제의 발굴 및 제도화 검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추진		

## 전략3 투명한 경영환경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간부문 청렴도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의 반부패 역량 향상을 지원하여 투명한 경영을 확산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부패를 해결하여 부패 체감도 개선



## 26.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확보

과제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요 <input type="checkbox"/> 일반	주 관	권익위, 금융위
------	--	-----	----------

### 1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의 실효성 제고【권익위】

- (개선방향)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이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의 실질적인 통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사외이사) 제3자적 입장에서 회사경영을 조언·견제·감시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법조인·임직원 출신 이사의 결격사유 등 명확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 개선
    - ※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의 냉각기간 연장, 사추위 구성 시 대표이사 참여 배제 등
  - (준법감시인)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의 경우, 임면사실 공시 의무화, 선임의무 위반 시 단계별 제재기준 마련 등으로 제도 내실화 유도
    - ※ 예) 과태료 부과(1차) 외에 시정명령(2차),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3차) 등 고려
  - (준법지원인) 상장회사에서 준법·윤리 경영과 법률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선임의무 미준수 상장회사에 대한 제재수단 신설, 준법지원인의 내부비리 고발 의무 명시 등 검토
    - ※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개선【금융위】

- (내부통제 준수책임 강화)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실태 관리를 위한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실태 미흡시 제재근거 마련
- (선임공시 확대) 준법감시인을 직원으로 선임(중소형 금융사)하는 경우에도 임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임사실 공시의무 부과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기업 준법경영 시스템 실효성 확보	관계부처 협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행현황 점검·평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통과	개정안 시행		

## 27. 기업회계 내실화 및 감사인 독립성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금융위, 국세청
------	--------------	-----	----------

### 1 기업회계 제도 내실화 【금융위】

- (독립성 강화) 외부감사 제도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현재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분식회계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나, 향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 등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 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3년간 외부감사를 받는 제도
  - 실질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 ※ 표준감사시간 :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시간으로 「외부감사법」에 법적근거 도입
  - ※ (참고사항) 감사인 지정제의 엄격한 운영, 감사인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내부통제 강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CEO·CFO·회계 실무자 대상 회계교육 체계 마련
  -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외부감사기준 마련 등
- (공시 확대)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으로 중요 경영위험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확대
  - ※ 핵심감사제 :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이 함께 선정
- (감독 강화)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선진화 하고, 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
  - ※ (기존)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 → (개선)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등

## 2 기업회계와 세무조사 연계 검토【금융위, 국세청】

- (세무조사와 연계) 외부감사 의견과 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 「국세기본법」이 개정('18.1월)되었으며,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중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기업회계 내실화 및 감사인 독립성 강화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기업회계와 세무조사 연계 금융위-국세청 논의	개정안 공포, 회계성실도 반영 방안 마련	지속 추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 28.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민관합동
------	-----------	-----	-----------

### 1 경제단체·협회·기업과 협업을 통한 윤리경영 지원 【권익위】

- (기업 반부패가이드 보완·확산) 윤리경영을 위한 단계별 세부지침인 기업 반부패가이드를 기업인 간담회,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확산
  - ※ (가이드 예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전담조직 마련, 부정청탁방지 규정 제정 등
- (윤리경영 컨설팅 등)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체계 및 제도, 교육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반부패시책 등 공유 확대

### 2 부패행위에 대한 기업(법인) 책임 강화 검토 【민관합동】

- (기업 책임) 회사 직원이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부패행위를 행할 경우, 그 책임자인 법인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 (참고 사례) 「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등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 시 그 행위자 외에 법인도 제재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는 면책
- (책임 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반부패 실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모색
  - ※ 기업 반부패 가이드, ISO37001 등 국내외 가이드 이행 시 기업의 상당한 주의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기업 반부패가이드 보완·보급 윤리경영 컨설팅 실시		지속 추진		
	관계기관 협의		제도화 방안 마련		

## 29.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를 통한 민간의 청렴노력 지원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관	민관합동(권익위, 전문연구기관)
------	--------------	----	-------------------

### 1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위한 청렴지수 조사 추진

-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 개발(7월), 시험 측정 실시(10월), 민간부문 청렴지수 측정 및 결과 공개('19년~)

#### |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 방안(안) |

- ▶ (평가대상) 민간부문 중 조사가 필요한 대상 영역을 범주화
  - ※ 예시)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청렴지수 도출
- ▶ (평가방법) 민간부문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등 국제 평가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 ▶ (추진체계) 민간부문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 시민사회 또는 국책연구기관이 주관하는 방안 등

### 2 청렴수준과 연계한 민간 청렴노력 지원

- (민간 지원) 청렴지수 조사 결과는 기존의 기업 윤리경영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여 민간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컨설팅, 인센티브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를 통한 민간의 청렴노력 지원	연구용역 추진	시험 측정 실시	민간 청렴지수 측정	측정결과 발표	민간 청렴 노력 지원

## 30.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법무부
------	-----------	-----	-----

### 1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추진 방안) 공익법인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가칭)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추진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 변호사, 관계부처 공무원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 마련 추진
  -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 현재 주무관청별로 산재해 있는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가 총괄하는 내용의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
- (추진 목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정경유착 비리에 의한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방지,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 ※ (참고사항)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2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적극 추진

- 추진 경과
  - 현행 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부합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해외 입법례 수집, 실태 조사 등 실시
  - 현재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정기적 T/F 회의 진행 중
- 추진 계획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법령 개정 T/F 운영 및 개정안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논의	법안통과 후 후속조치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등 설치·운영	

## 31.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공정위, 특허청, 국토부
------	--------------	-----	---------------

### 1 불공정 하도급 개선 및 담합 근절 【공정위, 특허청】

-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부당한 하도급기술편취 등 개선
  - 공정한 납품단가 협상을 위해 경영정보(원가내역 등) 요구행위 금지 및 노무비 변동(최저임금 인상 등)을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에 포함
  - ※ 「하도급법」 개정 시행 예정('18.7월)
  - 공사기간 연장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으로 추가
  - 「부정경쟁방지법」 상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특허청장 등에게 위반여부 조사·시정권고 권한 부여
  -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행 예정('18.7월)
  - ※ (참고사항)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권한 확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불공정 제재 강화) 기술유용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
  - 소극적 신고사건 처리 위주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체제로 개편하는 등 법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T/F) 운영('17.12월~)
  -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해 ①기술자료의 보호범위 확대, ②기술자료 유출 금지규정 도입, ③기술유용 조사시효 연장(3년→7년) 등 제도개선
  - ※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술 자료 요구·유출·유용행위에 한해 조사시효 연장(3년→7년)하는 하도급법 개정('18.3월)
  -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확대 추진
  - 과징금 상향, 기계·자동차 업종 등 직권조사 및 10만개 사업자 대상 서면 실태조사 추진
- (담합 감시 강화) 공공분야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에 피해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중점감시
  - 정부·공공기관 발주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구분할, 물량 나눠먹기, 가격 담합 등의 입찰담합 효과적 적발·차단
  -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소비자 가격 인상 등 담합행위 감시 강화

- (감시역량 강화) 효과적인 담합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개선 및 협업
  - 고도화된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운영('17.12월~)을 통해 담합 징후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
  - 공정위·발주기관(20여개)간 입찰담합방지협의체를 운영하고(연2회) 해외 경쟁당국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국제 공조 강화
- (제도개선) 담합억지력 확보를 위해 담합 적발 시 기대비용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대책 운영
  - 고발활성화, 과징금 상한의 상향 조정 등 행정·형사 제재 강화
    - ※ 법인 외에 행위자 개인 고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발지침 개정('18.3월), 담합 과징금(벌금) 부과율 상한(매출액 대비) : 한국 10%, 미국 20%, 영국·EU 30%
  -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촉진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 집단소송제 :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일부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2 건설현장 불법 (재)하도급 관행 근절【국토부】

- (책임성 강화)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관리의무와 불법행위 연대책임 강화
  - 하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의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면 현행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영업정지·과징금으로 강화
  - 필요 시 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하여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시장질서 회복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	법안 시행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및 담합감시, 입찰담합방지협의체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개정안 통과에 연계하여 후속조치 진행		

## 32.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	--------------	-----	---------------

### 1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공정위】

- (조사·공개 강화)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선진적 시장거래관행 정착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강화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 확대
    - ※ 품목별 공급가격 중위값, 유통과정상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 여부 등
  -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현황·거래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도입
  -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 대리점 본사 및 대리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17.8~12월)
- (피해구제 강화) 소상공인·중소업체의 협상력 강화 및 피해구제 수단 강화
  -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행위 및 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3배) 배상제 운영
  - 가맹점단체에 대한 신고제 도입,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 및 사업자단체 구성·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1,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2 방송 분야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근절【방통위】

- (종합대책 마련) 방송사·외주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 발표)에 대한 분기별 이행점검 실시
  - ※ 외주제작사 인권 보호,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지급기준 등
- (안전대책 수립) 제작인력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17.12월), 제작인력에 대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 방송평가 항목 신설

### 3 화물운송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국토부】

-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차주의 적절한 운임 보장을 위한 도로안전운임제 도입
  -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대형화주·운송사 등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화물차주의 수입 하락 방지, 운임협상력 증대 등을 위해 운임제도 개선
  - ※ 적정운임 보장을 통해 과적·과로·과속운전 등을 방지하고,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제한적·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 (권리보호 강화)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강화 추진
  - 현행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위·수탁 차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 이후까지 보장 확대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	가맹법 시행령 개정, 대리점분야 대책 마련	유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유통 가맹분야 직권조사 실시				
	방송 외주제작 분야 협의체 운영 및 분기별 이행 점검		지속 추진		
	안전운임 도입 추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운임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안전운임 위원회 심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 33. 재건축·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관	국토부
------	--	----	-----

#### 1 정비사업 금품제공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부적절 행위 규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 등 제공 시 시공자 선정 취소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처벌 규정 강화
  -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부여
  -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향응 등 제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부과

#### 2 입찰제안서 기준 등 정비

- (시공 무관 사항 제외) 건설사가 입찰 제안서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사비, 재건축부담금 등)은 제안 금지 조치
- (시공내역 등 제출) 과도한 대안설계 방지를 위해 입찰제안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 등을 제출 하도록 추진
  - ※ 시공내역 : 설계도서, 시공방법, 물량산출 근거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재건축·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	「도시정비법」 개정추진, 입찰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정		지속 추진		

\* 「도시정비법」 개정안 마련·발의('17.11월),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34. 사학비리 근절 추진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교육부
------	--------------	-----	-----

### 1 사학기관 회계 감리 강화

- (회계관리) 사학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감리 강화
  - 연간 회계 감리 법인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17년 20개 → '22년 60개)하여 법인별 감리주기를 단축(15년 → 5년)
  - ※ (추진 절차) 감리 기본계획 수립 → 감리 대상기관 선정 → 서면 및 현장 감리 실시 → 감리결과 보고 및 사학기관감리위원회 개최 → 감사인 부적정 발견사항 금융위 통보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회계 감리 실시
  - ※ '18년(25개) → '19년(30개) → '20년(40개) → '21년(50개) → '22년(60개)

### 2 사학기관 관련 제도 개선

- (제도 개선) 회계 감리 수탁기관의 범위 설정 및 대학 적립금 투자시 사학기관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사학기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 추진
- ※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공포 및 관보게재

### 3 비리당사자 복귀 제한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법령 개정) 사학비리자의 복귀 제한 강화를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 ※ (참고사항)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운영 배제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사학비리 근절 추진	'18년 감리 기본계획 수립,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추진	25개 기관 대상 감리 실시, 「사립학교법」 개정추진		30개 기관 대상 감리 실시 ('19.10월)	

## 35. 공공조달 분야 부패행위 억제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	--------------	-----	---------------

### 1 공공조달 분야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감경 배제) 뇌물을 제공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감경 배제 추진  
 ※ 공공조달계약 법령 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재규정 신설) 하도급자를 통한 뇌물 제공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한 사각 지대의 경우, 관련 개별법령에 영업정지·과징금 등 제재규정 신설  
 ※ 공공조달의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는 국가·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뇌물 제공 시 법령 상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불가

### 2 개별법상 제재 연계

- (연계 강화)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허가·등록관청에 통보하여 개별 법령 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관련 예규·매뉴얼 등에 통보 의무 명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안내 확대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공조달 분야 부패행위 억제	제도개선 방안 권고		계약 관련 법령 개정 및 이행 현황 점검		

## 36. 보건·의료 분야 부패 관행 개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복지부
------	--------------	-----	-----

### 1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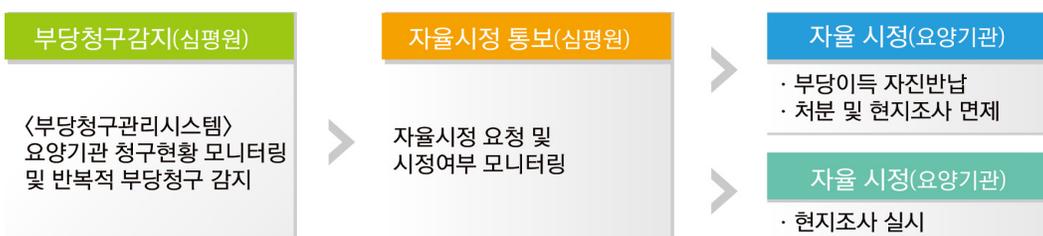
- (지출보고서 제도)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해당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의 작성·보관 의무화('18.1.1~)
- (예방교육 신설) 제약·의료기기 기업, 법률전문가 대상 의약품 리베이트 예방 정규 교육과정 신설 추진
  - ※ 교육과정은 보건복지인력 전담 교육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개설·운영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제재기준 변경)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 규모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윤리적 기준 강화
- (반부패 경영) 제약기업의 반부패 경영시스템 도입 등 자정노력 지원

### 2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행 개선

- (조사규모 확대) 조사 인력 확충 및 서면조사 등 효율적 조사방식으로 요양기관 조사 규모 지속 확대
  - ※ ('15년) 725개소 → ('16년) 813개소 → ('17년) 816개소 → ('18년) 1,000개소 예정
- (자율신고제 도입)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도입 검토

#### |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절차 |

〈개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부당개연성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당이득을 자진 반납, 미개선 시 현지조사



### 3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

- (진입규제·처벌 강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 규제 및 처벌, 요양급여 관련 법령 등 정비
  - (진입 규제) 민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임원 정수,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등
  - (처벌 강화) 조사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 및 조사 거부 시 처벌 신설 등
  - (징수 강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채무면탈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활용,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확대 등 추진
- ※ 사무장병원 : 「의료법」 상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 등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등을 의미
- (단속 강화) 국조실·지자체·경찰청·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 필요사항 지속 발굴 및 단속 추진
  - 민원신고,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표적조사 및 집중단속 실시
  - ※ 행정조사 대상 기관을 '17년 대비 30% 확대 (161개 →210개)
  - ※ 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대응협의체 개최(연3회)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보건·의료 분야 부패 관행 개선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및 리베이트 예방교육과정 신설, 반부패경영 도입지원	제약기업 윤리기준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CSO 등 제3자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리	제약업계 자정노력 강화방안 지속검토	
	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규모 확대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도입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지속 추진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마련	행정조사 실시(연중)	행정조사 실시(연중)	사무장병원 규제강화 법률개정	

## 37. 악의적·지능적 탈세 근절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국세청, 관세청
------	--------------	-----	----------

### 1 ▶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근절【국세청】

- (추징·고발) 기업 자금의 불법유출 및 사적사용 등 악의적 탈세행위 발견시 관련 기업·사주 일가 동시조사 등을 통해 세금 추징 및 고발 조치 실시
  -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과학적인 연계분석 노력, 일정규모 이상 고액 자산가의 재산 변동내용을 주기적으로 검증, 변칙적인 행위 대처

#### | 탈세수법의 지능화 현황(예시) |

- ▶ 대기업의 구매·판매과정에서 임·직원 등 명의의 위장계열사 중간 끼워넣기 거래로 이익분여 또는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 ▶ 미신고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한 후 국외에 은닉하거나 자녀에게 증여

- (검증 강화)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변칙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고질적 탈루자에 엄정 대응
  - 차명재산 운영,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등의 행위를 철저히 검증
- (유관기관 협력) 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탈세관련자료 및 외환거래 위반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공받아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
  - ※ 정기적으로 수집한 과세자료 및 국세청 보유 과세인프라를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과세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 2 수출입 거래 악용 및 관세탈루 등 근절【관세청】

- (수출입거래 단속 강화) 기관간 공조 강화, 기획단속 등 확대 추진
  - 수출입가격 조작 등 정상거래를 가장한 해외비자금 조성 행위 및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국내반입 등 자금세탁 행위 집중 단속
  - ※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불법 외환거래정보·해외은닉재산정보·무역사기 혐의정보 입수 및 공유
  - 유관기관과의 군수품 계약, 보험대출 자료 등 정보 공유를 통한 공공재정 부정편취 기획단속 확대
- (관세탈루 관리) 고위험 업체·품목 중심으로 관리 강화
  - 우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 및 밀수 기대이익이 높은 담배 등 검사 강화
  - 정보채널 확대를 통한 수출입 기업의 불법행위 정보입수 강화
  - ※ 생산자 단체, 소비자 보호원 등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탐사보도 언론사 등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무역기반 불법행위 적극 대응
  - 고위험 탈세 업체·업종·품목 위주로 수시 관세조사 실시
  - ※ 탈루가 지속되는 다국적기업 및 과다환급 우려 업종, 고세율 품목 기획심사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악의적·지능적 탈세 근절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세 관련 정보수집 주요 탈루유형 정밀 분석 및 세무조사				
	수사자료 등 통보 관련 실무회의				
	관세탈루 기획단속	정보입수채널 확대 간담회	관세탈루 기획단속	정보입수채널 확대 간담회	관세탈루 기획단속

## 38. 국부유출 방지 대책 추진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관	국세청, 법무부, 검찰청
------	--	----	---------------

### 1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국세청】

- (정보 수집 및 분석)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세회피처 관련 거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탈루혐의 분석
- (엄정한 세무조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비지금 조성 행위에도 엄정 대응
- (제도 개선) 해외 거래에 대한 신고·소명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

### 2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근절【국세청】

- (세원관리 철저) 다국적기업의 재무정보, 세무정보 등을 분석하여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다국적 기업 탈루유형 정밀 분석
- (세무조사 강화) 이전가격 조작, 변칙 자본거래, 여러 국가에 걸쳐 복잡하게 설계된 위장거래 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공격적 조세회피 억제) 해외펀드가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국내투자 수익을 탈루하는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 3 국제공조 강화 및 범정부 협업 방안 마련【국세청】

- (국제공조 강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
- (범정부 협업방안 마련) 부처간 역외탈세 정보공유 강화, 조세포탈범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 및 검찰과 공조

#### 4 기술유출 방지【법무부, 검찰청】

- (기술유출사범 수사역량 강화) △중점 검찰청 및 전담부서 중심으로 수사역량 집중, △ 첨단기술 분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절차 직접 참여 및 과학적 의견진술 확대를 통한 수사의 전문성·신속성·투명성 제고, △해외수사기관(미 연방수사국<FBI>, 중국 공안부,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등과 긴밀한 협력
-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피해자 지원)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지원 등 기술유출 피해자 지원 강화
- (범정부 차원의 협업 방안 마련)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국방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 정책수립 등에 참여

#### 5 해외 범죄수익 환수 강화【법무부, 검찰청】

-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범죄수익환수 기구와의 협력 강화) △ 해외 범죄수익환수에 필요한 해외계좌 개설 및 외환거래 정보 등을 보유한 국세청, 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 ARIN-AP(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해외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연구
- (관련 입법 정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지속적 확대 추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국부유출 방지 대책 추진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탈루혐의 조사 강화, 국제적 논의동향에 따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규제방안 마련				
	검찰청, 전담부서 중심 집중수사, 수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확충,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 등 협업 강화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 등(연중) 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한 산업기술 보호 정책수립 참여(연중)				
		기술유출 방지 관련 입법 정비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범죄수익환수 기구와의 협력 강화, 해외 범죄수익 환수 철저(연중)				
		해외 범죄수익 환수 관련 입법정비			

## 39.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금융위
------	--------------	-----	-----

### 1 자본시장 교란행위 제재 강화

- (처벌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에 형벌만 부과 가능했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병과 검토
  - ※ 과징금 대상 : (기존) 시장질서교란행위 + (추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시효 확대) 손해배상 시효를 대폭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민사 책임 강화
  - ※ 손해배상 시효 : 안 날로부터 1년, 있던 날부터 3년 → 각각 2년, 5년으로 연장
- (형사벌 대상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 시 형벌대상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 공개 추진
  - ※ 증권선물위원회 :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금융위 내의 회의체
- (내부통제 강화)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 검토

### 2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 강화

- (유관기관 협력)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역량 강화 및 고도화되는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
- (내부고발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독려하고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과징금 신설병과, 공개방안 등 법무부 협의	「자본시장법」개정 및 공개방안 발표	세부기준 개정	지속 추진	
	손해배상 시효 확대 추진 상장법인 내부통제 방안 검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시행				
	유관기관 협력 강화방안 마련	자본시장조사단 역량 강화			

※ (참고사항)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 전략4 실천하는 청렴

---

부패행위자는 엄단하고, 신고자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부패에 대한 처벌과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보호 원칙 확립
- 청렴교육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정착



## 40.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관	법무부, 검찰청, 권익위
------	--------------	----	---------------

### 1.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확립 【법무부, 검찰청】

- (상시단속 전개)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의 현상, 구조적 원인 등을 파악하고,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 실시
- (엄정한 처리)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
  - ※ '16.9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뇌물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 (내부감시·고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부패범죄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내부 감시·고발에 따른 수사 강화
- (사면) 5대 중대 부패범죄, 재벌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한 사면 상신

### 2.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시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권익위】

- (고발 의무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청탁금지법」 제6조에 위반되므로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조치
  - ※ 「청탁금지법」 매뉴얼(직종별),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반영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	중대범죄 상시단속 전개, 사건처리 기준 검토·개정, 「청탁금지법」 매뉴얼 등 개정		지속 추진		

## 41.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인사처
------	-----------	-----	----------

### 1 부패 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 근절【권익위】

- (감경 제한 공직자 확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시 징계 감경이 제한 되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공직배제 공직자 확대) 금품등을 능동적으로 수수하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처분 추진
  - ※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금품수수 징계 감경 제한, 능동적 금품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 시 파면·해임 규정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전체로 확대

### 2 각급기관 부패행위자 징계실태 점검 및 우수시책 확대【권익위, 인사처】

- (처벌 실태점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부패행위자 징계실태 점검 확대 및 우수시책 발굴·확산
  - ※ 「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 징계양정 기준 준수 여부

#### | 부패행위자 징계 우수시책 (예시) |

- ▶ (한국철도공사) 부패행위자는 근무성적평정, 성과급시 최하위 등급 부여
- ▶ (우체국금융개발원) 해외주재원, 감사부서 근무자는 가중 처벌
- ▶ (한국동서발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보직해임 의무화

- (직무고발 지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운영실태 점검 등 추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및 징계 실태 점검		지속 추진		
		직무관련 범죄 고발제도 운영실태 점검			

## 42.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법무부, 검찰청
------	--------------	-----	----------

### 1 범죄수익 환수 기반 강화

- (환수기반 강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조성
  - 대형 범죄수익환수 현안 대응,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 등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
    - ※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18.2월)
  - 일선 현장의 범죄수익 환수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환수업무 패러다임 설계 및 매뉴얼 발간, 전담 인력 확충 등 추진
    - ※ 전문화·지능화·국제화 경향을 보이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은닉 수법에 적극 대응

### 2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관간 공조

- (유관기관 공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범죄수익환수 정보 분석 및 환수기법 연구 등 환수역량 극대화
  -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를 중심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범죄수익환수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외 범죄수익 환수 적극 추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범죄수익 자산 공매 등 환수 진행	판결 확정 등에 따라 자산 공매 진행			
	업무매뉴얼 발간, 전담검사 교육 강화	환수 전담 인력 확충 추진			
	환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정보공유				

## 43.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및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법무부
------	--------------	-----	----------

### 1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권익위】

- (청구대상 확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공공재정을 지원받은 개인·단체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추가

- 보조금 편취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 강화

| (참고) 현재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

-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2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법무부】

- (제도 개요)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이 손해의 예방이나 그 시정 및 회복을 구하는 제도

- (도입 추진) 외국의 유사제도 연구, 현행 소송법 체계와의 조화, 시민사회·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소송제도 마련 추진

※ 국민소송 대상범위, 소의 종류, 소송절차,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방식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및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국민감사청구 관련 법 개정안 제출	법안통과와 연계 후속조치			
	국민소송제도 도입 연구용역	국민소송제 도입 목표			

※ (참고사항)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참여 소송절차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음

## 44.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대책 추진

- (신고 유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수요층을 겨냥한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 부패현안, 구조적 부패 등에 대한 집중(특별)신고기간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내부 신고 및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예방교육 등 실시
- (보상·포상 확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확대
  - 신고사건 모니터링, 외부기관 신고추천을 통해 공익기여가 높은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금 적극 발굴·지급
  - 공익신고 보상 상한액을 현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향

### 2 신고자 보호 인프라 확대

- (보호체계 확립) 내부신고자의 불이익 사전예방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 일관된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
  - (사전예방) 전담조사관의 내부신고자 밀착접촉을 통해 불이익 점검 강화, 보호 조치 후 2년간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추가 불이익 적극 대응
  - (사후관리) 특별보호조치 등 신고자 중심의 법적용 확대, 조사기관의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실시
- (신고 지원) 대리신고, 부패·공익신고 기금 도입 등 신고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속 발굴(~'22년)
  -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절차 도입, 긴급구조금 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영,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및 전보·전직 등 신고자 우대 기관 적극 발굴
  - 신고자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부패·공익신고기금' 도입 추진(~'22년)
  - ※ '부패·공익신고기금 마련방안' 연구용역('17.12월)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 방안 검토 ('18년 하반기)

- (보호인프라 확대)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보호강화 인프라 확대
  - (부패 사건) 국회·법원 증언, 수사기관 고소·고발까지 보호대상 범위 확대
  - (공익신고 사건)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18.5월 284개→'19년 320여개),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추진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대리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신고대상 법률 추가
    - ※ 필요적 책임 감면 : 공익신고로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의 감면을 보장하는 제도

### 3 신고자의 영예 확보 및 인식 전환

- (긍정적 인식 확산)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및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 추진
  -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등 신고자 격려·지원 행사 개최 및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영예 확보 및 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
    - ※ 신고자 포상, 주요사례 홍보,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변호사 대리신고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명예의 전당 설치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부패공익 신고기금 도입 추진

## 45.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 분야 부패방지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행안부, 인사처
------	-----------	-----	----------

### 1 범정부적인 안전부패 감시 시스템 구축【행안부】

- (안전부패 실태조사)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
  -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부패 사례, 실태, 원인 등을 분석한 후 권한·재량권 조정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지침 등 제도를 개선
- (제재수단 확대)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보완
  - 과태료·벌금 등 엄정한 법 집행과 병행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 될 때까지 영업정지·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
  - ※ 과태료 등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제재의 효과 확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18.2월) 과징금 상한을 1천→1억 상향)
  - 특히, 고의적·악의적인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협업체 구성)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 중앙·지자체를 포괄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 안전부패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중점과제 선정 및 실적관리 등 추진
  - ※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법」에 추진근거 마련

### 2 안전 분야 반부패 환경 조성【행안부】

- (안전정보 공개) 국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개 추진
  - 건축물 정보, 화재 대점검 결과, 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법령상의 안전점검 결과를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대국민 공개 추진
- (불시점검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확대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의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 및 문제점 방치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

- (국민감시 체계) 안전 분야 국고보조사업 등 국민 감시체계 강화
  - 각종 재난안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민간전문가·지역주민 참여를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자발적 국민 감시기반 마련
  -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설계검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과다설계 방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주민참여 감독제 등으로 부당행위 근절
- (주민참여) 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감시 체계 구축
  - 국민 모두가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공익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홍보 강화,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등 추진
  - ※ 국민참여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 '자율적 통제' 환경을 조성
  - 또한, 안전신고, 지자체의 안전점검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안전정책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
  - ※ 안전보안관(통·반장 등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 등 기존 민관 협업체계 활용

### 3 안전 분야 취업제한 확대【인사처】

- (취업제한 확대) 국민안전, 방위산업 등 국민신뢰 저하 분야 중심으로 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추진
  - 기준규모(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 영리사기업체 등도 공공성, 파급력 등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 분야 부패방지	안전 부패 실태조사 등	안전 분야 부패방지 세부계획 수립	지속 이행 관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취업제한 기관 확대지정	운영실태 점검·평가

\* (참고) 「공직자윤리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17.12.29)

## 46.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체결) 사회 각 부문·분야별, 지역 단위별로 반부패·청렴 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실천의제를 선정,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
  - 사회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추진('18년)
  - ※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가칭) '한국청렴재단' 신설 지원
  - 협약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 범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테마 중심으로 민간공모사업 선정·지원

### 2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홍보 강화

-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전개) 반부패·청렴 사회협약의 국내·외 홍보 및 시민대상 청렴강좌 개설 추진
  - 협약 체결(지역·부문·분야별) 시 영문 보도자료 배포, OECD·UN 등이 개최하는 국제 회의를 통한 홍보, 국제평가기관에 대한 정책 설명 등
  - 지역주민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청렴시민 강좌 개설 등 추진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대단위 청렴사회협약 체결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지속 추진
	민간공모사업 선정·지원	지속 추진			

## 47.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주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주관	권익위
------	-----------------------------	--	----	-----

### 1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제도 교육 강화

- (교육) 다양한 홍보 콘텐츠, 워크숍 등을 통해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공직자 교육 시행 및 공감대 확산
  - 법령 개정사항 내용 및 관련 사례,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 시행
  - ※ 리플릿, 카드뉴스, 포스터 배포,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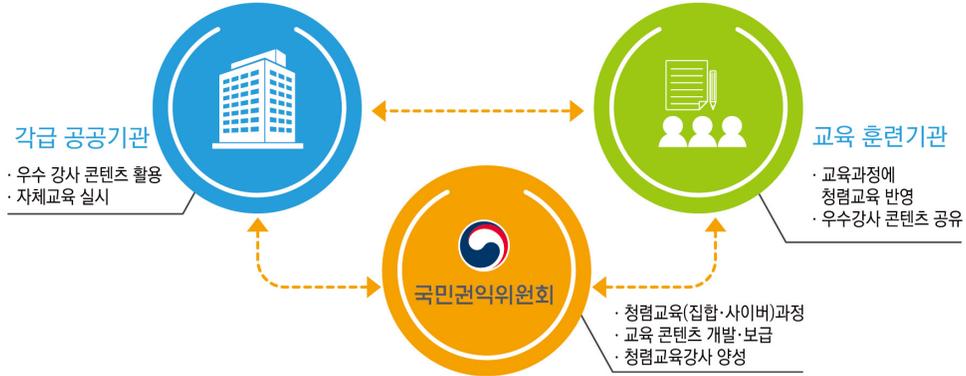
### 2 공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

- (고위직 교육 확대) 조직의 리더에 걸맞는 고위직의 청렴 역량 강화
  -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어 고위직 맞춤형 청렴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실시여부 점검
-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연수원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교육생의 유형(공무원/공직유관 단체/교사 등), 교육목적 등에 따라 구분·운영
  - 사례중심 토론 등 참여형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일수 등 과정 확대
  -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 청렴도 하락 원인·보완점 등을 발굴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교육하는 청렴도 향상 과정 도입·운영

### 3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정착

- (청렴교육 협력체계 구축) 권익위 - 각급기관 - 교육훈련기관간 협력으로 모든 공직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 운영(1년 2시간 이상)
  - ※ 권익위는 교육 콘텐츠 등의 지원 역할,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확대, 각급기관은 업무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 실시
- (청렴교육 이행점검) 각급기관 평가에 청렴교육 의무화 여부 반영 추진
  -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반영하고, 미흡기관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우수 운영 사례에 대한 확산 병행

### 【 청렴교육 지원·협력체계 】



- (청렴교육 강사 양성) 우수 청렴교육 강사 양성·지원을 통한 각급기관 자체 청렴교육 지원
  - 부패·공익신고자,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청렴강사로 활동하도록 기반 마련,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확산
  - ※ '17.12월 현재 청렴교육강사 1,068명, 매년 500명씩 '22년까지 3,500명 양성
  - 만족도 결과(강의내용, 교육생 반응 등)를 '강사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고, 주기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등으로 강사관리 체계화

#### 4 청렴연수원의 교육기능 내실화

- (연수원 기능 강화) 교수·연구부 설치, 교수요원 배치 추진(~'22년)
  - 교수·연구부 신설 및 전임교수요원 배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렴교육 실시 기반 마련
  - 다양한 분야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활용, 강의활동과 신규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및 해외사례 수집·분석 등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국제사회와 협력사업 추진)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청렴교육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 전파 및 홍보 강화('20~'22년)
  - 개발도상국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KOICA 연수 프로그램, 주한 외국인 교육 실시 등 다각화
  -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지역 여름아카데미 과정」 등 연계·운영 추진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고위직 교육실적 점검 실시		지속 추진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신규 콘텐츠 개발·보급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신규 콘텐츠 개발·보급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전문강사 과정 운영	청렴교육 전문강사 만족도 공개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실시	청렴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개최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실시
		청렴도 향상과정 도입·운영	기관대상 교육	지속 추진	
	교수·연구부 설치를 위한 조직 보강		KOICA 연수프로그램 운영		KOICA 연수프로그램 운영

## 48.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교육부
------	--------------	-----	----------

### 1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강화 【권익위, 교육부】

- (영유아 청렴교육)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누리과정 내 청렴 내용 포함,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교육 확대
  - ※ 영·유아 대상 인형극 뮤지컬 등을 개발, 전국 순회 상연 등으로 도덕적 감수성 제고
- (청소년 청렴교육) 자유학기제, 청렴 관련 범교과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초·중·고 전 학교에 보급하는 등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진로체험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청렴 체험·전시관 개설 추진('20~'22년)
  - 청렴 관련 체험·놀이 프로그램 제공, 어린이 인형극·뮤지컬 상영 등
  - ※ 공직자, 아동·청소년 등 전 국민이 찾아오는 청렴문화 체험시설으로 자리매김

### 2 예비 사회인 등 청렴인식 제고 【권익위】

- (예비 사회인 청렴교육) 대학생, 예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확대 추진
  - 내부신고자 보호, 청탁금지 제도 등 반부패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육·해·공군사관학교·경찰대학 협업으로 반부패 청렴 가치관 형성과정 신설 검토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영·유아 대상 인형극 등 청렴 프로그램 개발			청렴 체험·전시관 프로그램 개발 용역
	청렴 관련 범교과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등				

## 49.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서약 내실화 지원

- (서약제도 운영 지원)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 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 제공
  - 권익위는 청렴서약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각급기관이 기관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시책 등으로 자율적 활용

### 2 반부패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외부점검·감사 면제) 청렴도 우수기관 등에 대해 자율적 통제 기회 부여
  - 청렴도 우수기관 차년도 청렴도 측정 및 행동강령 이행점검 면제 추진
- (수범사례 홍보·확산 기회 부여) 청렴도 우수기관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기회 확대
  - 청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관련 대국민 보고 등 국민·공직자 대상 반부패 행사에서 사례발표 기회 부여

### 3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방안 확대

- (내부신고자 인사 불이익 방지) 내부신고자에 대해 보이지 않는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
  - 내부신고자의 기관 내 감사관련 부서에 배치 검토, 기관 청렴강사 요원 활용 등으로 신고자 자긍심 고취 및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식 제고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신고자 불이익 방지 검토	청렴서약 가이드 제공			
		수범사례 홍보 기회 부여	청렴도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50. 국제사회 반부패 협력 강화

과제구분	□ 주요    ■ 일반	주 관	권익위
------	--------------	-----	-----

### 1 국제 평가와 연동한 취약분야 분석 및 국제홍보 강화

- (취약부문 분석) 국제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부패 취약부문 진단 및 세부대책 마련
  - ※ IMD(국가경쟁력지수), WEF(국가경쟁력지수), PERC(아시아부패지수) 등
- (정책홍보 강화) 국제평가 전문가 및 기업인, 대내외 언론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추진
  - ※ 경제단체, 주한외국상사와 협력하여 반부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는 뉴스레터, 간행물, 주간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반부패 성공사례 스토리를 적극 발굴하여 영문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외신기자 간담회 등을 적극 개최
  - UN, OECD, APEC 등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반부패 노력과 정책성과를 홍보

### 2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 (국제 반부패협약 이행)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제 반부패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
  - OECD 뇌물방지협약 수검, UN반부패협약 2주기 점검 등

#### | 주요 반부패라운드 현황 |

UN	OECD	APEC	G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격년) 및 실무 그룹회의(연3회)</li> <li>· 당사국 183개국</li> <li>· 반부패협약 이행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연4회)</li> <li>· 34개 OECD 회원국 포함 41개국</li> <li>·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실태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투명성워킹그룹 회의(연2회)</li> <li>· 21개 APEC 회원국</li> <li>· APEC 반부패행동 계획 이행 및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연3회)</li> <li>· G20 회원국</li> <li>· G20 반부패 행동 계획이행</li> </ul>

### 3 반부패 기술전수 확대

- (ODA 사업 실효성 제고)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으로 국제사회에 반부패 정책 전수 추진
- (맞춤형 기술지원) 수원국의 발전단계 및 제도·정책 내용의 도입방식·난이도 등을 고려, 전수 콘텐츠의 내용을 맞춤식으로 결정(관계부처간 협업 방식)

#### | 전수 콘텐츠(예시) |

반부패 인프라	「부패방지권익위법」, 행동강령제도 등 거시적 반부패 제도
ICT 시스템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공직자 재산등록, 클린카드 등
반부패 평가제도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인식도 등
청렴 우수 시책	청렴교육 운영, 민간부문 협력 등 기관 단위의 시책

### 4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추진

- (국제반부패회의) 전세계 반부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 등을 홍보

#### | IACC 회의 개요 |

- ▶ 회의명 :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 ▶ 성 격 : 국제투명성기구(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이해 관계자간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의 장, 정부·학계·민간 등 약 1,500명 참석
- ▶ 주 최 : 개최국 정부, IACC 위원회, TI 본부 공동주최  
※ '03년 제11차 IACC 한국 개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참석

#### | 과제 추진일정 |

과제명	'18.상	'18.하	'19.상	'19.하	'20.상~
국제사회 반부패 협력 강화	국제 반부패 실무회의 대응	OECD 협약 4주기 실시점검	UN반부패협약 실사 대비 국내이행현황 점검	UN반부패협약 2주기 실시점검	UN반부패협약 이행 우수 및 개선 사례 보고
	개발도상국 연수 신규·연장 MOU	개발도상국 현지컨설팅	중장기계획 및 효과성 제고 검토	중장기 전략 계획 마련	정책맞춤형 컨텐츠 마련
	외국인CEO 간담회 개최	WEF, WJP 등 국제평가지수 분석	G20, APEC 등 국제회의의 활용 성과 홍보	주한외국상의 협업 홍보	외국인CEO 간담회 개최
	국제행사개최 타당성 심사, 행사 유치 의향서 제출	준비기획단 발족	주관기관간 MOU	회의 주제 및 프로그램 개발	IACC 개최

# V

## 이행관리 체계 및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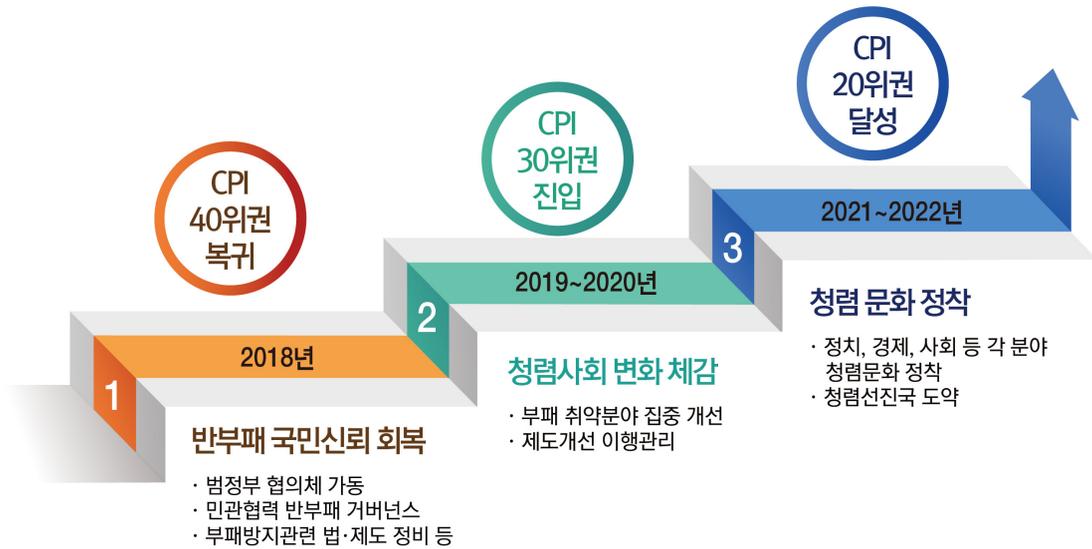
- 1 추진 체계
  - 2 단계별 기대효과
  - 3 2022년, 대한민국의 달라진 모습
- 참 고 50개 과제 목록

## 1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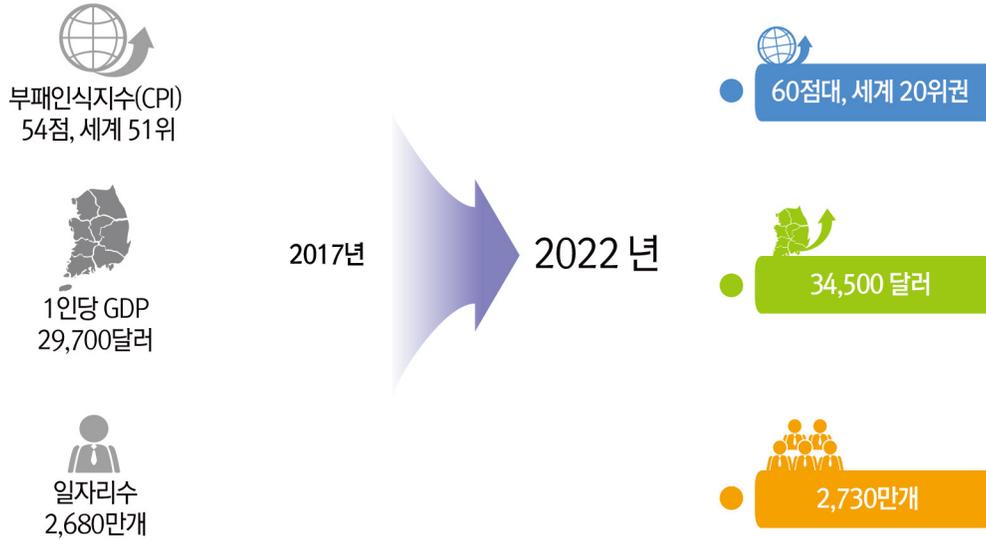
- 50개 추진과제에 대하여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를 통해 주관 부처의 이행상황을 반기별 점검
  - 주요과제별 이행상황과 수범사례는 주관부처 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반부패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관계분야에 확산
  -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여건과 이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필요 시 기존과제의 보완사항 발굴
- 각급기관별 정책 이행상황을 정부포털·각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국민생각함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참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 필요 시 권익위에 설치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활용 병행
- 이행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권익위 주관) 및 표창 등 우수 인센티브로 연계하고 성과 미흡기관은 적극적 활동 독려

## 2 단계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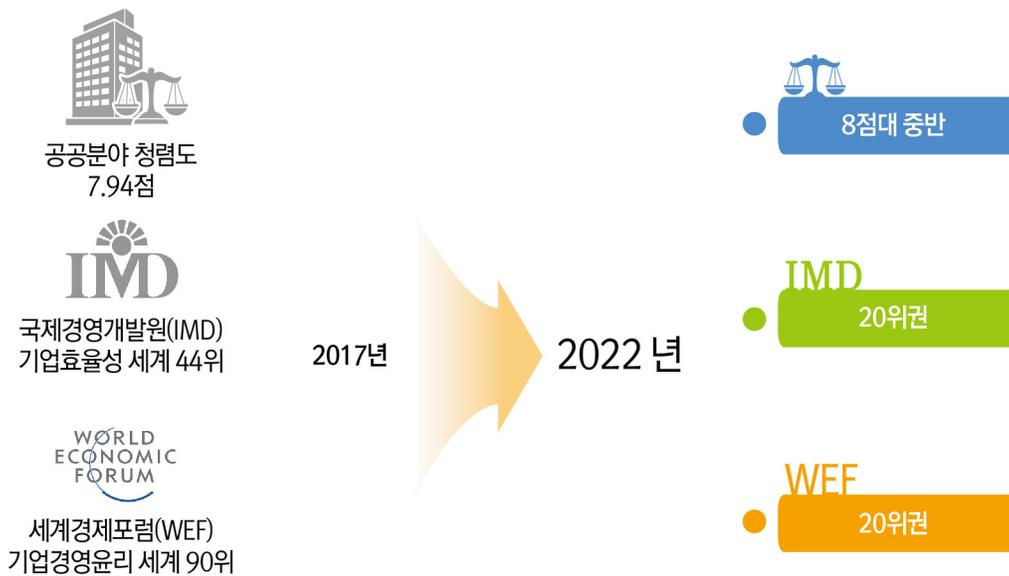
- 1단계: 반부패정책 국민신뢰 회복 단계 【2018년 / CPI 40위권 복귀】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 시민사회·기업 등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복원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제도 및 기구 등 인프라 정비
- 2단계: 청렴사회 변화 체감 단계 【2019~2020년 / CPI 30위권 진입】
  - 부패 취약분야 법령 및 제도 등 집중 개선
  - 반부패 종합계획 및 부패 제도개선 이행관리
  - 국가적 차원에서 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
- 3단계: 청렴 문화 정착 단계 【2021~2022년 / CPI 20위권 달성】
  -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정착
  - 적발·처벌, 제도개선,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국제사회에서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

## 사회가 깨끗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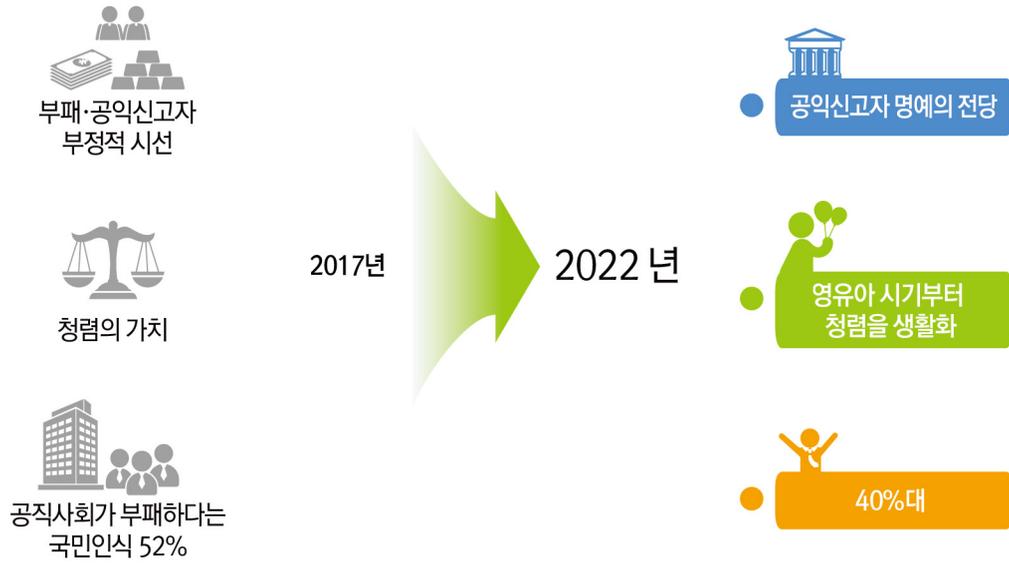


※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17.12월)

## 더 강한 국가가 됩니다



## 청렴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 내 삶이 좋아집니다.



참 고

50개 과제 목록

전략	과 제	주관기관
 함께하는 청렴	① 범정부 반부패 정책 협의체 운영	권익위
	②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	권익위
	③ 반부패청렴 총괄기구 구축 및 기능 강화	권익위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	법무부
	⑤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청렴노력 견인	권익위
	⑥ 정보 공개 확대 및 반부패 정보 활용 강화	행안부, 권익위
 깨끗한 공직사회	⑦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 (★)	권익위, 국조실, 행안부, 감사원, 기재부
	⑧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	권익위
	⑨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 확립 (★)	권익위
	⑩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법제화	인사처
	⑪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인사처
	⑫ 퇴직자 행위제한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인사처, 권익위
	⑬ 공공분야 ‘갑질’ 근절 (★)	국조실
	⑭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⑮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제재 강화	방사청
	⑯ 지역 토착비리 엄정 대처 및 제도개선 추진	검찰청, 경찰청, 권익위
	⑰ 대형 국책사업 비리 예방 등 투명성 제고	국조실
	⑱ R&D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과기부, 중기부
	⑲ 국민연금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국민연금공단
	⑳ 문화체육 분야 공정성 확립	문체부
	㉑ 병무행정 부패 취약분야 개선	병무청
	㉒ 지도·감독·조사 분야 유착소지 차단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
	㉓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권익위
	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권익위, 국회
	㉕ 법조분야 공정성 강화	민관합동(권익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략	과 제	주관기관
 <p>투명한 경영환경</p>	⑳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확보 (★)	권익위, 금융위
	㉑ 기업회계 내실화 및 감사인 독립성 강화	금융위, 국세청
	㉒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	권익위, 민관합동
	㉓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를 통한 민간의 청렴노력 지원	민관합동 (권익위, 전문연구기관)
	㉔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법무부
	㉕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공정위, 특허청, 국토부
	㉖ 고질적 불공정 관행 정상화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㉗ 재건축·재개발 분야 비리 예방	국토부
	㉘ 사학비리 근절 추진	교육부
	㉙ 공공조달 분야 부패행위 억제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㉚ 보건·의료 분야 부패 관행 개선	복지부
	㉛ 악의적·지능적 탈세 근절	국세청, 관세청
	㉜ 국부유출 방지 대책 추진	국세청, 법무부, 검찰청
㉝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금융위	
 <p>실천하는 청렴</p>	④①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	법무부, 검찰청, 권익위
	④②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	권익위, 인사처
	④③ 부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무부, 검찰청
	④④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및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권익위, 법무부
	④⑤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권익위
	④⑥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 분야 부패방지 (★)	행안부, 인사처
	④⑦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	권익위
	④⑧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권익위
	④⑨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권익위, 교육부
	④⑩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권익위
	④⑪ 국제사회 반부패 협력 강화	권익위